

26호

No. 26

국제이주법

International Migration Law

이주 용어 사전

제2판

Glossary on Migration

Second Edition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1951년에 설립된 이주분야의 선도적 정부간기구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자 및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지원
- 이주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도모
-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이주자의 인간존엄성 및 안녕 보장

Established in 1951, IOM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IOM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humane and orderly migration benefits migrants and society. IOM acts with its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 Assist in meeting the growing operational challenges of migration management,
-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tion issues,
- Encourag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igration,
- Uphold the human dignity and well-being of migrants.

Publis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1211 Geneva 19
Switzerland
Tel: +41.22.717 91 11
Fax: +41.22.798 61 50
E-mail: hq@iom.int
Website: www.iom.int

ISSN 2224-722X
© 20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실린 내용은 출판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정보시스템에 의한 저장, 전자식, 기계식, 복사, 녹음 등 어떠한 형태나 방법을 통한 전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가격: 25,000원
25 달러(미)

Price: KRW 25,000
USD 25

26호
No. 26

국제이주법
International Migration Law

이주 용어 사전
제2판

Glossary on Migration
Second Edition

Richard Perruchoud and Jillyanne Redpath-Cross, eds.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어 번역본 발간사.....	5
Foreword to the Korean edition	7
제2판 머리말.....	9
Foreword to the second edition	11
초판 머리말.....	13
Foreword to the first edition.....	15
감사의 글	17
Acknowledgements	19
수록 용어.....	21
Glossary Entries	
색인	97
Index	

한국어 번역본 발간사

국제이주기구(IOM)가 2004년 처음 발간한 이주용어집(Glossary on Migration)은 이주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이주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지금까지 이주용어집 초판은 영어에서 14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나, 한국어 번역본은 발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민현상이 빠른 속도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입안과 실무의 체계화,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타국과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여러 정책분야에서는 이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언론과 정책포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단골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여전히 한국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불법이민자와 난민지위신청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이민현상에 대한 철저한 정책검토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이주용어와 개념에 대한 통일된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대두되는 한국의 이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MRTC: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본 연구원은 정부와 지역사회, 이민자 및 그 가족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입안 및 실무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교육기관이다.** 본 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 직임을 맡게 된 것은 나의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이다.

2010년 IOM법무부서는 이주용어집 초판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기존 용어를 가다듬은 제2판 발행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주용어집의 한국어 번역본 발행 및 배포는 본 연구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2010년 중순 이와 같은 힘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기관이자 연구원의 주요협력기관인 고양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주용어집 영문본 제2판 마무리 작업 시점과 자금지원 시점이 일치했던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지만, 이를 통해 본 연구원이 이주용어집의 최신판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었고, 그 첫 번역판이 한국어가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용어집 제2판은 곧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이주용어집 제2판의 한국어 번역본이 한국이민법 및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본 연구원이 갖는 기대다. 또한 이 번역본이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이민정책입안 및 실무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본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이번 용어집에 대한 기대는 이 용어집이 한국과 아태지역 및 전 세계 파트너와 함께 연구원의 주요목표, 즉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국내 및 역내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이주용어집 영문본 제2판 발행을 위해 애써주신 IOM 법무부서 리차드 페르슈드(Richard Perruchoud) 편집장과 질리안 리드패스크로스(Jillyanne Redpath-Cross)에게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을 완성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다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번역사업팀장 겸 한국어 번역본 편집장으로 수고해 주신 본 연구원 이상림 박사
- 초안 작성 및 검토, 자문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본 연구원 김혜진 위촉연구원
- 실질적이고 확실한 감독과 조언을 해 준 본 연구원 정기선 연구교육실장
- 용어에 대한 논의와 통일된 개념의 확보 및 번역수정을 위해 수많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본 연구원 동료들과 한국 이민연구 및 정책관련 전문가들

전례 없는 인구이동시대에 이민정책입안과 실무를 아우르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주용어집과 같이 권위 있는 참고문서가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어집을 통해 이주논의와 정책발전을 위한 통일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유익을 얻게 되길 바란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찰스 한스

고양시, 한국

www.iom-mrtc.org

Foreword to the Korean edition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2004, IOM's Glossary on Migr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for the important contribution it makes to further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migration terminology, and thus for advancing the cause of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n migration issues. The first edition of the Glossary has, to date,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fourteen languages, but had not been presented in Korean.

The context of mig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is, however, rapidly becoming more complex, creating a need for increased sophistication in policies and practices, and for increase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n migration issues. In Korea, very challenging birth and ageing demographics push the issue of migration to the forefront in many areas of public policy. Inward migration for labor and for marriage is increasing, multiculturalism has become a frequent area of discussion in the press and in other public policy forums, the Korean diaspora remains significant and continues to be seen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Korea's further development. Irregular migration into Korea has become more widespread. Furthermore claims for refugee status are increasing. The need for thorough policy review and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Korean migration matters creates a complementing need for a common understanding of key migration terms and concepts.

In 2010, in response to Korea's new migration challenges,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MRTC) was formally inaugurated a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ommitted to informing and improving policy making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ig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and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 have the honor and pleasure of serving as the Centre's first Director.

Also in 2010, IOM's legal department was wrapping up its work on a second edition of the Glossary, taking into consideration new concepts and further refining the terminology from the first edition. The transl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lossary was identified as a major priority by the MRTC's research and training staff. The Centre was pleased to be able to identify in mid-2010 the funding for this demanding task from one of our key partners, the city of Goyang where the Centre is located. The timing was fortuitous as the second edition of the Glossary was then in near-final manuscript form. This enabled the Centre to pursue translation of the most recent edition, and for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new edition to be presented in the Korean language. Undoubtedly, the second edition Glossary will quickly appear in many more languages.

It is the IOM MRTC's intention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Glossary on Migration serves as a key resource to inform and refine Korean migration law and policy. Further, we hope that it will help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all concerned with the advancement of Korea's and the region's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As Director I fully expect this resource to serve as an essential tool in helping the MRTC meet its main objective with partners in Korea,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o contribute to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its work on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The MRTC is indebted to the work of the IOM legal department, in particular the English second edition's editors, Richard Perruchoud and Jillyanne Redpath-Cross. For the Korean translation I wish to make special mention of, and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three MRTC colleagues who so expertly led, supported and guided this initiative:

- Dr. Lee Sang-lim, Researcher at the MRTC, who served as the team leader for the translation project and, effectively, as editor of the Korean translation;
- Ms. Kim Hye-jin, MRTC Junior Research Fellow, who put in countless hours in organizing and reviewing the drafts and coordinating the consultation meetings; and,
- Dr. Chung Ki-seon, Chief of the MRTC's Research and Education Department, who provided effective and positive oversight and guidance.

I also wish to acknowledge and extend my deep appreciation to the many colleagues in the Korean migration research and policy community who contributed so much of their time to discussing the terminology, ensuring common conceptual ground and refining the translation.

In an age of unprecedented human mobility, the need for continually updated and definitive reference documents, such as the Glossary, to guide our thinking and broaden common ground in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s particularly acute. It is my most sincere hope that you benefit from this volume as much as I have, and that it leads to further common ground in migration discussions and policy development.

Dr. Charles M. Harns

Director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Goyang-si

Republic of Korea

www.iom-mrtc.org

제2판 머리말

IOM 이주용어집은 초판이 2004년도에 영어로 출판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어, 타지크어, 아랍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프랑스어, 알바니아어, 보스니아어, 중국어, 터키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및 마케도니아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주용어집은 실무자, 이주관련 정부 공무원, 학생 등에게 소중한 도구가 됨으로써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주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는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용어집은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있으며 다른 언어로의 번역요청도 계속되고 있어 IOM은 이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판을 발행할 당시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용어정의 수정과 용어추가가 필요한 첫 시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완성도 높은 용어집을 후속판으로 제작할 가능성을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 포괄적이며 사용자의 귀중한 의견을 반영한 IOM 이주용어집 제2판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어정의 수정과 추가에 심혈을 기울였고, IOM 이주용어집 출판 이후에 협력 기관에서 발행한 이주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용어집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용어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용어집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주의 특성에 발맞추어 앞으로 계속 최신판으로 개정되어야 할 “살아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IOM은 이 제2판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주문제를 논의할 때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된 용어사용은 연구와 통계 수집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 간 정보교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용어에 대한 상호이해는 세계 이주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판을 만든 IOM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별히 중요한 이 작업에 헌신을 다하여 준 샤일라 보라(Shyla Vohra), 파올라 페이스(Paola Pace), 카라 울프(Cara Wulf), 애나 릴리크랩(Anna Lillicrap), 리자드 콜윈스키(Ryszard Cholewinski)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네바에서
2011년 1월

편집자
리차드 페루슈
질리안 레드페스-크로스

Foreword to the second edition

The inaugural edition of the IOM Glossary on Migration has been widely disseminated since its publication in English in 2004 and it has now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Tajik, Arabic, Spanish, Slovenian, French, Albanian, Bosnian, Chinese, Turkish, Greek, Portuguese, Italian and Macedonian. The Glossary continues to meet its objectives in being a valuable tool for practitioners, government migration officials, students and others and has been effectively utilized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a discussing migration issues. IOM is pleased with the positive response that it has generated; it has clearly met a need and there is ongoing demand for translations into other languages.

However, even at the time of its initial publication, we recognized that it was a first attempt, with room for improvement, revisions of definitions and additions of terms. In the Foreword to the 2004 edition, we alluded to the possibility of a subsequent, more complete, edition. We are pleased now to be able to introduce a second edition of the IOM Glossary on Migration which we consider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invaluable input from users of the glossary. Great care has been taken in revising and adding definitions and an effort has been made to streamline definitions to ensure consistency with partner organizations who have, since IOM's publication, also issued glossaries on migration and related topics. Nevertheless, we consider the glossary to be a "living document" which will continue to need to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evolving nature of migration and, in this respect, we continue to welcome feedback from users.

It is IOM's hope that this improved edition will continue to mo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a common language when discussing migration issues. Uniformity of usage of terms serves to greatly enhance research and statistics gathering,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and among States. Mutual understanding of critical terms is therefore an important first step in achieving coordinated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global migration.

As a final point, acknowledgement needs to be made of the dedication of IOM staff who have worked on this revision, and in this respect, we wish to thank our colleagues Shyla Vohra, Paola Pace, Cara Wulf, Anna Lillicrap and Ryszard Cholewinski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is important work.

Geneva,
January 2011

Richard Perruchoud
Jillyanne Redpath-Cross
Editors

초판 머리말

이주가 국제사회의 조율된 접근방식과 대응책을 요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이주문제에 대한 논의를 양자협정을 넘어선 지역 간, 또 최근에는 국제무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의견조율 및 협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이주용어집은 이와 같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주분야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와 개념의 수렁 속에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용어집이 한숨에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용어집 초안은 1970년대 제작되어, 국제이주기구(IOM) 내 직원들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비엔나에 소재한 IOM Technical Cooperation Centre에 의해 용어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고, 그 결과 2001년 P. J. Van Krieken이 편집한 “이주 핸드북(Migration Handbook)”이 출간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이주법 분야에서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IOM은 이주관련 전문 용어의 다양한 정의를 하나로 통일하여 실무자, 공무원, 학생, 등에게 믿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용어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집을 편집하면서 이주분야 용어의 정의가 대부분 모호하고, 논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 분야에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주가 전통적으로 국가차원에서만 다뤄져 왔기 때문에, 국가마다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명시된 의미나 함축된 의미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특정 관점이나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이주관련 용어뿐 아니라 다른 전문용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는 송출국 및 유입국 정부, 경찰, 국경관리당국,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이주자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체의 관심분야입니다. 용어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의가 없을 경우, 각 조직체는 조직체의 관점에 따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용어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trafficking)”라는 용어는 그 정의가 매우 다양했으나, 최근에 들어서야 공식적인 국제조약에 명시된 정의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외의 수많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 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는 최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사용하고자 했고, 그러한 정의가 없을 경우, 일반적인 정의를 사용하거나 대안적인 정의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용어집을 편집하면서 느꼈던 또 다른 어려움은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이주(illegal migration)’, ‘비밀이주(clandestine migration)’, ‘미등록이주(undocumented migration)’, ‘비정규이주(irregular migration)’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용어들은 정확하게 구

별되어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어의 상호참조를 통해 대안용어 혹은 상호 통용이 가능한 용어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용어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부서에서 일하는 나의 동료, 샤일라 보라(Shyla Vohra), 질리안 리드패스(Jillyanne Redpath), 카트리나 토몰로바(Katarina Tomolova)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전문성, 즐거운 헌신, 지치지 않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번 용어집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집자 리차드 페루슈드 (Editor, Richard Perruchoud)

Foreword to the first edition

Migration is increasingly being acknowledged as an issue that needs a global approach and coordinated responses. States are not only discussing migration issues at the bilateral level, but also regionally and lately in global arenas. A commonly understood language is indispensable for such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successful.

This glossary attempts to serve as a guide to the mire of terms and concepts in the migration field, in an effort to provide a useful tool to the furtherance of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glossary has been some time in the making. Informal drafts were prepared by IOM in the seventies and used by its staff. A renewed attempt to a consolidation was made in the late eighties by IOM technical cooperation centre in Vienna and its output was published in 2001 in the "Migration Handbook" edited by P. J. Van Krieken. In the context of IOM's recent initiative to strengthen and enhance its involve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the decision was taken to produce this glossary and to consolidate into one definitive text the terminology used in the migration field in order to provide a reliable reference for practitioners, government migration officials, students and others. The present product cannot be said to be exhaustive and any comments or suggestions for an eventual second, and more complete, edition will be welcome.

When compiling the glossary, it became quickly apparent that definitions in this field are often vague, controversial or contradictory. There is an absence of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s, which stems partially from the fact that migration is something which has traditionally only been addressed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ult is that the usage of migration term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Further, even within a country, terms can vary as to the meaning or implication. Definitions – and this is true of all terminology, not only that related to migration – may vary according to a given perspective or approach. Migration is of concern to a number of bodies, including governments of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police and border authoritie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igrants themselves. Where there are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s, the potential exists for each group to decide, formally or informally, on its own definition, according to its perspective. By way of example there was a wide array of definitions for the term "trafficking", which have only recently been consolidated with a definition being provided in a formal trea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many other terms have not yet been internationally agreed upon. Within this glossary, care has been taken to provide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where it exists; in other cases, a general definition is provided and mention made of alternative definitions.

Another challenge faced in this compilation was the variety of terms used to describe the same or similar phenomenon. For example, there may be nuances between the terms "illegal migration", "clandestine migration", "undocumented migration" and "irregular migration"; however, to a large extent they are used loosely and often interchangeably. To this end, some cross-referencing of terms has been inevitable in order to guide the reader to alternative or interchangeable terms.

Last but not least, I wish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Shyla Vohra, Jillyanne Redpath and Katarina Tomolova, my colleagues in Legal Services, who contributed to this endeavour and made it happen: their competence, smiling dedication and untiring efforts were instrumental in bringing the glossary to life.

Richard Perruchoud
Editor

감사의 글

먼저 이 이주 용어집 한국어판 번역을 나누어 맡아주신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정기선 연구교육실장을 비롯한 동료들 강동관 박사, 신지원 박사, 오정은 박사, 이완수 박사, 연아람, 한태희, 김우찬, 황선영, 박성일, 이보라, 김잔디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김혜진 연구원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이 용어집은 발간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제적 식견으로 용어집 작업을 이끌어 준 찰스 한스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이주 용어집 한국어 번역에 외부 자문으로 참가하여 귀한 조언들을 해주신 서울공익법센터(APIIL)의 김철중 변호사님, 배재대 이해경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 전광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참여해주신 외부 검토자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확하고 건설적인 지적들은 이 용어집 발간에 훌륭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이 같은 출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에 깊은 고마움을 포함합니다.

이 상 립

이주 용어 사전 한국어 번역본 편집책임자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사의 글

먼저 이 이주 용어집 한국어판 번역을 나누어 맡아주신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정기선 연구교육실장을 비롯한 동료들 강동관 박사, 신지원 박사, 오정은 박사, 이완수 박사, 연아람, 한태희, 김우찬, 황선영, 박성일, 이보라, 김잔디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김혜진 연구원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이 용어집은 발간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제적 식견으로 용어집 작업을 이끌어 준 찰스 한스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이주 용어집 한국어 번역에 외부 자문으로 참가하여 귀한 조언들을 해주신 서울공익법센터(APIL)의 김철중 변호사님, 배재대 이혜경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 전광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참여해주신 외부 검토자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확하고 건설적인 지적들은 이 용어집 발간에 훌륭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이 같은 출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상 립

이주 용어 사전 한국어 번역본 편집책임자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Acknowledgements

First, I wish to thank all of my colleagues at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who participated in this translation: Dr. Ki-seon Chung, Chief of Research and Education Department; Dr. Dong-Kwan Kang; Dr. Julia Jiwon Shin, Dr. Jung-eun Oh; Dr. Wansoo Lee; Ms. Ahrham Yeon; Mr. Tae-hee Han; Mr. Woo-Chan Kim; Ms. Sun-young Hwang; Mr. Seong-il Park; Ms. Bo-ra Lee; and Ms. Jandi Kim. I would also like to say a special word of thanks to Ms. Hye-jin Kim. This translation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great efforts from her. I also wish to specially thank the MRTC Director, Dr. Charles Harns, for the guidanc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he provided, and for his unwavering support to the MRTC.

I am also indebted to the many contributors to this Glossary from outside the MRTC who gave so generously of their time and expertise. In particular, I wish to thank Mr. Jong Chul Kim (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Dr. Hye-Kyung Lee (Pai Chai University), and Dr. Kwang-Hee Ju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sessions and provided invaluable information. To the external reviewers from UNHCR Korea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 am also profoundly grateful for both the clarity and the constructive nature of your comments.

The MRTC sincerely thank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province of Gyeonggi and the city of Goyang for their substantial support to the MRTC, and for their continuing and much-valued guidance of our work.

Dr. Sang-lim Lee
Editor, Korean Edition of the Glossary
Principal Associate Researcher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수록 용어

Glossary Entries

ㄱ

- 1 **가입**
accession "비준", "수락", "승인" 그리고 "가입"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귀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함 (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조(1)(b)).
참조 항목: 비준 (ratification),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to a treaty), 조약 (treaty)

- 2 **가족결합권**
family unity, right to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을 권리. 이 권리는 자국에 사는 국적자(국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으로 보호받음 (예: 1948 년 세계인권선언 16 조; 1950 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8 조; 1961 년 유럽사회헌장 16 조; 1996 년 유럽사회헌장 16 조(개정),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7, 23 조; 1966 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조; 1969 년 미주인권협약 17 조; 1981 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18 조). 가족결합권은 가족재결합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가족구성원이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 때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가족단위로 함께 사는 것은 절대적 권리는 아님.
참조 항목: 인권 (human rights), 가족재결합 (family reunification/ reunion),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 3 **가족구성원**
family members *참조: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 4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과 결혼이나 친자관계로 묶인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음.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4 조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원은 "해당국가간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나 관련 법률에 의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부양 자녀와 타 부양가족.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사람 혹은 관련법률에 의해 결혼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참조 항목: 아동 (child), 피부양자 (dependant), 수반신청자 (derivative applicant)

- 5 **가족이주**
family migration 가족재결합과 가족단위 이주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념.
참조 항목: 가족재결합 (family reunification/reunion), 가족결합권 (family unity, right to),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 6 **가족재결합**
family reunification/
reunion 강제이주 혹은 자발적 이주로 인해 헤어져 있던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 재결합하는 과정.
참조 항목: *피부양자 (dependant), 가족이주 (family migration), 가족결합권 (family unity, right to)*
- 7 **가처분**
injunction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 가처분을 받아내려면 신청자는 일반적이고 적절하고 완전한 법적 구제가 없었으며, 법원의 그러한 처분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 8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다음의 행위들을 지칭하는 표현:
(a)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를 들어, 아동의 매매와 밀매, 채무 담보, 농노화 그리고 무력충돌에 활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의무 징용 및 노동을 포함; (b) 성매매, 음란물의 제작 또는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알선 및 제공; (c) 불법적인 활동, 특히 관련된 국제 조약에 규정된 마약 생산과 밀매를 위한 아동의 이용, 알선 및 제공; (d)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과 환경 상,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성에 위해를 가할 경향이 있는 일(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조약과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ILO 182번 협약 3조).
참조 항목: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 아동 노동 (child labour),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착취 (exploitation), 노예상태 (servitude), 노예제 (slavery),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9 **감시 제도**
lookout system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입국 시에 체포해야 하거나, 혹은 더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국가 공식 목록, 대개(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동화 되어있음. “감시대상목록” 제도라도 불리는 감시제도는 대개 관계부처간 프로젝트이며 모든 법 집행기관, 정보 및 이주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함. 입국 혹은 사증발급에 대한 의사결정시 감시대상목록은 보통 컴퓨터든 장부의 형태이든, 영사관과 국경관리자에 의해 검토됨.
참조 항목: *생체측정학 (biometrics), 일차심사 (primary inspection), 추가심사 (secondary inspection)*
- 10 **감시대상 목록**
watchlist **참조:** *감시 제도 (lookout system)*
- 11 **감지기**
sensors 사람의 움직임이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 여기에는 움직임 감지기(motion sensor)와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포함됨. 어떤 감지기는 사람이 직접 작동해야 하는 반면 어떤 감지기는 국경근처 외딴 곳에 설치되어 국경 통제 시설로 정보를 전송함.
참조 항목: *이산화탄소 감지기 (carbon dioxide sensors)*
- 12 **강간**
rape 피해자의 생식기관을 포함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침입. 물리적, 물리력에 의한 위협, 강압, 강압적 분위기를 이용하거나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문, 생식구(生殖口)에 물체 또는 신체 부위로 침범하는 행위.
참조 항목: *성폭행 (sexual assault)*
- 13 **강제**
coercion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물리적 힘에 의한 강요 또는 그와 관련된 위협을 의미. 강제는 경제적 성격을 띠 수 있는데,

- 개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기도 함.
참조 항목: 강제노동 (*forced/compulsory labour*), 강제이주 (*forced migration*)
- 14 **강제 재정착**
 forced resettlement/
 relocation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개인들 혹은 집단들을 비자발적으로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이전시킴.
- 15 **강제결혼**
 forced marriage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략결혼. 종종 지참금이 가족에게 지급됨. 거절할 경우, 종종 폭력과 학대가 개입됨.
참조 항목: 강제 (*coercion*)
- 16 **강제귀환**
 forced return 행정적 혹은 사법적 행위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출신국, 경유국, 혹은 제 3 국으로 강제적으로 돌아옴.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강제송환 (*refoulement*),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귀환 (*retur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17 **강제노동**
 forced/compulsory
 labour 처벌에 대한 협박으로 어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국제노동기구 29 호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 조(1)*).
참조 항목: 아동 노동 (*child labour*), 강제 (*coercion*)
- 18 **강제송환**
 forced repatriation **참조:**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 19 **강제송환**
 refoulement **참조:**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강제귀환 (*forced return*),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박해 (*persecution*), 귀환 (*return*)
- 20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체결국이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국경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난민법 원칙.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많은 입안자들에게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으나, 반면 관습 규범의 존속을 위한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음.
참조 항목: 비호 (*asylum*),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 주권 (*sovereignty*)
- 21 **강제이주**
 forced migration 자연적 원인이건 인위적 원인이건 (예를 들어, 난민, 국내이재민뿐 아니라 자연재해 혹은 환경재해, 화학재해 혹은 핵재해, 기근 혹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 생명과 삶의 위협을 포함한 강제적 요소가 있는 이주이동.
참조 항목: 강제 (*coercion*),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난민 (*refugee*)
- 22 **강제적 이재이주**
 forced displacement 무력충돌법(the law of armed conflict)에서, 점령지 내부에 민간인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이동. 1949년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49 조, 1949년 8월 12일

- 제네바 협약의 부가의정서 85 조, 1977 년 국제무력충돌 피해자 보호 관련 부가의정서에 따라서, 강제적 이재이주는 불가피한 군사적 이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임. 보다 일반적으로, 강제적 이재이주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 또는 공동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무력충돌, 시민소요, 혹은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의 이유로 일어남.
참조 항목: 이재민 (*displaced person*), 이재이주 (*displacement*), 국외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23 **강제퇴거**
 deportation
 입국거부 또는 체류허가만료 후 외국인을 영토 밖의 특정지역으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
참조 항목: 집단추방 (*expulsion*), 강제송환 (*refoulement*), 퇴거 (*removal*)
- 24 **강제퇴거 명령**
 deportation order
 퇴거를 명령하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결정이나 행위.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 25 **강행규범**
 jus cogens
 개별국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인 법규. 일반적인 국제법규에서의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어떠한 권리유예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 후에 확립되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국제법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이 구성단위인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서 수락되고 승인되는 규범. (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3 조) 예로는 고문 금지가 있음.
참조 항목: 고문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고문 (*torture*)
- 26 **개발**
 development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을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완전한 잠재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이 가치를 두는 삶을 주도하기 위해 선택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함. 이 정의는 성장이나 소득 지표로 측정되는 경제적 발전에만 중점을 두는 관점에서 벗어나 과정의 인간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음.
- 27 **개별이주**
 individual migration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경우.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계획된 대량이주와 달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개인, 기관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참조 항목: 집단 이주 (*mass/collective migration*)
- 28 **개인 정보**
 personal data
 개인 데이터의 모든 정보는 정보 대상을 확인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음.
참조 항목: 정보 보호 (*data protection*), 정보 대상 (*data subjects*)
- 29 **거부된 신청자**
 rejected applicant
 이주의 맥락에서, 한 국가로 이주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나라 영사관 혹은 대사관이 거부한 신청자.
참조 항목: 입국불허사유 (*grounds of inadmissibility*)
- 30 **거소지**
 domicile
 한 개인이 물리적으로 거주하면서 집이라고 여기는 장소;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돌아가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실제적으로, 고정된, 주된, 영구적인 집.
참조 항목: 상주지 (*habitual/usual residence*), 거주(지)

		(<i>residence</i>)
31	거주(지) residence	<p>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행위 혹은 사실; 거소지와 구분하여 사실상 살고 있는 장소. 거주는 보통 특정 장소에서 거주자로서의 신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반면, 거소는 보통 특정 장소에서의 신체적 존재 및 안주하는 장소로 삼고자 하는 의사를 요구함. 따라서 한 사람의 거주지는 동시에 여러 곳일 수 있으나 거소지는 한 곳뿐임.</p> <p><i>참조 항목: 상주국 (country of habitual/ usual residence), 거소지 (domicile), 상주지 (habitual/ usual residence),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i></p>
32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p>국가의 소관 당국이 비국민에게 발행하는 문서로서, 이 문서를 소지한 비국민이 거주가 허가된 기간 동안 그 국가에 거주할 권리를 증명함.</p> <p><i>참조 항목: 체류기간도과(초과) (overstay), 허가(증) (permit), 거주(지) (residence)</i></p>
33	건강 health	<p>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p>
34	건강 검진 health assessment	<p>이주 맥락에서 건강 검진은 인구 이동이 수용국의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관리하고 감소시킬 뿐 아니라, 보건 환경과 의료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사를 통해 이주자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 출국 전 건강 검진은 치료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유입국 사회의 공중 보건 또는 해당 이주자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이주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함.</p>
35	검문소 checkpoint	<p>입국을 위해 사람들이 멈추어 국경 관리자들의 검사와 입출국 허가(clearance)를 받는 장소(국경, 공항 또는 항구).</p> <p><i>참조 항목: 출입국 카드 (arrival/departure card), 국경 (border), 국경 통제 (border control), 월경 (border crossing), 국경관리자 (border officials)</i></p>
36	격리 quarantine	<p>전염되거나 감염되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부터 온 사람이나 동물, 상품, 육상 교통수단, 배 또는 비행기에 대해 일시적으로 고립시키는 위생적 조치.</p>
37	결정 determination	<p><i>참조: 심사 (adjudication)</i></p>
38	경계 boundary	<p><i>참조: 국경 (border)</i></p>
39	경유 transit	<p>2 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원근을 막론하고 잠시 멈추는 것.</p> <p><i>참조 항목: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경유난민 (refugees in transit), 경유국 (State of transit), 경유승객 (transit passengers), 경유사증 (transit visa)</i></p>
40	경유 난민 refugees in transit	<p>다른 곳에서의 재정착을 조건으로 접수국에서 임시 입국허가를 받은 난민.</p> <p><i>참조 항목: 난민 (refugee), 재정착 (resettlement), 경유</i></p>

(transit)

- 41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합법 또는 불법)이주의 흐름에 있어 중간에 통과하는 국가.
참조 항목: 경유국 (State of transit), 경유 (transit)
- 42 **경유국**
State of transit 일반적으로 목적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유하는 국가.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조(c)에 따르면, 경유국은 해당자가 취업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출신국이나 상주국으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국가.
참조 항목: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제 3 국 (third country), 경유 (transit), 경유승객 (transit passengers), 경유사증 (transit visa)
- 43 **경유사증**
transit visa 특정 국가를 통과해 제 3 의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비국민에게 발행하는 사증. 경유사증은 소지자가 사증 발행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통상 24 시간 혹은 48 시간의 매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을 허가함.
참조 항목: 경유국 (State of transit), 경유 (transit), 경유승객 (transit passengers), 사증 (visa)
- 44 **경유승객**
transit passengers 오직 제 3 국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 2 국의 공항이나 항구에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도착한 사람들.
참조 항목: 경유국 (State of transit), 경유 (transit)
- 45 **경제적 이주자**
economic migrant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국 밖에 정착하고자 거주지를 떠난 사람. 이 용어는 박해를 피해 도망나온 난민과 구분하여 종종 느슨하게 사용되며, 또한 유사하게는 합법적인 허가없이 혹은 선의의 사유없이 비호신청과정을 이용하여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함. 이 용어는 취업을 목적으로 출신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참조 항목: 국경 노동자 (frontier worker),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계절이주노동자/이주 (seasonal migrant worker/migration)
- 4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평등과 비차별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 그리고 지적 복지를 확실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종종 요구됨. 공공 국제법에서, 이들 권리는 1966 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열거되어 있음: 노동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동조합 구성과 가입, 파업, 사회보장, 가족보호, 적절한 수준의 삶, 주택, 건강, 교육 등의 권리.
참조 항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인권 (human rights)
- 47 **계약 노동**
contractual labour 계약자에 의해 고정된 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위해 공급되는 노동.
- 48 **계절이주노동자/이주**
seasonal migrant worker/ migration 그의 작업이 성질상 계절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일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작업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 혹은 취업이주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b)).

참조 항목: 경제적 이주자 (economic migrant),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임시이주노동자 (temporary migrant workers)

49 고문
torture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개인에게 가하는 행위로, 고문당하는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어떤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그들이 행했거나 행했다고 의심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혹은 협박과 강요를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어떤 종류의 차별을 근거로 행해짐. 이러한 고통이나 괴로움은 공무원이나 공무를 행하는 사람의 동의나 묵인, 혹은 선동에 의해 행해짐. 고문은 적절한 처벌 중 불가피하게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포함하지 않음(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 조). 고문은 국제법에 위배됨(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 조, 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49 년 제네바 협약 공통조항 50,51,130,147 조).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비인도적 처우 (inhuman treatment), 강행규범 (jus cogens), 고문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50 고문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고문은 1948 년 세계인권선언 5 조, UN 의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 조, 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2 조와 다양한 UN 결의안, 1950 년 유럽인권협약 3 조, 1948 년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26 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고문은 국제적 범죄이며 고문 방지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고 기본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음. 고문 금지는 일반적으로 강행규범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국제법의 강제적인 규범으로 여겨짐.

참조 항목: 강행규범 (jus cogens),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고문 (torture)

51 고숙련/고급인력
이주자
highly skilled/qualified
migrant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개 두 가지의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고숙련 이주자는 최소 2 년의 고등교육을 마친 고학력자 성인을 뜻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고등 교육, 전문직 경험, 특정 직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

참조 항목: 숙련이주자 (skilled migrant), 유자격 국민 (qualified national)

52 고아
orphan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 어떤 국가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한 아동을 고아라고 부르기도 함.

참조 항목: 아동 (child)

53 공정한 재판
fair trial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정하고 이해관계 없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어야 한다는)기관규칙과 절차적 권리(즉, 소송상대방과 대면, 공개재판, 신속한 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공개된 판결문을 수령할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을 권리)에 따르는 법정재판.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참조 항목: 적법절차 (due process), 판결 (judgment)

- 54 **공해**
high seas 배타적 경제 구역, 접속 구역, 한 국가의 영해나 내수, 또는 군도 국가의 군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해역. 공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해상 공간은 어떤 국가의 영토권 아래에도 놓이지 않음. 공해 상에서 가능한 규제는 기국이 선박에게 가하는 경우 또는 공해 상에서 금지된 행위를 막기 위한 전투 중에 가하는 경우임(예: 노예 수송, 인신 매매, 해적, 마약 및 향정신제의 밀매, 추적, 밀수 등).
참조 항목: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기국 (flag State), 출입국관리구역 (immigration zone), 영해 (territorial sea)
- 55 **관습법, 국제**
customary law,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법원(法源). "관습법"은 일반관행과 법적확신(*opinio juris*- 관행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거나 법과 일관된다는 신념)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성립되어야 인정됨.
참조 항목: 국제법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국제법 주체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 56 **구금**
detention 정부 당국이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감금을 통해 제약하는 행위. 구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구금과 다른 행정조치(강제퇴거나 추방)의 이행을 위한 행정상 구금이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법과 규칙의 위반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비정규이주자는 행정상 구금의 대상이 됨. 많은 국가에서 난민지위나 입국 및 퇴거를 심사받고 있는 비국민도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조 항목: 행정상 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 양육권, 보호관리 (custody), 피구금자 (detainee)
- 57 **국가**
State 정해진 영토에 대한 법적 관할권, 효과적 통제권, 상주인구를 위한 공동결정권,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정치적 독립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로서 다른 독립체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 국제법상 자주적 국가의 기준은 보통 상주인구, 지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국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가에 대한 여부임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1조).
참조 항목: 주권 (sovereignty), 국제법 주체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 58 **국가 영역**
national territory 한 국가에 속한 혹은 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지리적 공간.
- 59 **국가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참조: 아동 입양(국제) (child adoption (international))
- 60 **국경**
border 두 국가 또는 이들 하위 영역의 영토 및 영해를 나누는 선. 또한 국경은 사람이 정착하여 개발한 영역의 가장자리를 지칭할 수도 있음.
참조 항목: 녹색 국경 (green border)
- 61 **국경**
frontier 참조: 국경 (border)
- 62 **국경 관리**
border management 사업가, 관광객, 이주자, 난민의 허가된 이동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비국민의 해당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적발 및 예방하는

- 것. 국경 관리의 방법에는 국가에 의한 사증 자격 요건의 부여, 불법 입국자를 수송하는 운송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해상 수송 및 이동의 차단이 포함됨. 국제 기준들은 적법한 여행자의 입국 촉진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또는 무효 문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차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
참조 항목: 국경 통제 (*border control*), 운송 회사 책임에 관한 법 (*carrier liability law*), 주권 (*sovereignty*)
- 63 **국경 노동자**
 frontier worker
 상시 거주지를 인접국에 두고 통상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이주노동자(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2)).
참조 항목: 경제적 이주자 (*economic migrant*), 순회노동자 (*itinerant worker*),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64 **국경 통제**
 border control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물리적 국경 또는 영토 밖 대사관에서 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드나드는 사람의 입출국을 규제하는 것.
참조 항목: 국경 관리 (*border management*), 국경관리자 (*border officials*), 검문소 (*checkpoint*), 주권 (*sovereignty*)
- 65 **국경관리자**
 border officials
 국경을 지키고 국가의 이민법(관습도 해당될 수 있음)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국경 경비 요원', '국경 경찰' 또는 '외국인 경찰'이라고도 불림.
참조 항목: 입국허가 (*admission*), 국경 통제 (*border control*), 국경 관리 (*border management*), 검문소 (*checkpoint*), 입국불허 (*non-admission*)
- 66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무력충돌, 일반화된 폭력, 인권유린, 자연재해 및 인간에 의한 재해 등으로 자신의 고향 혹은 상주지로부터 도주하거나 떠나도록 강요 받은 사람들 혹은 집단들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은 넘지 않음. (국내 이재이주에 관한 원칙 안내, UN 문서).
참조 항목: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이재민 (*displaced person*), 국외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실향민 (*uprooted people*)
- 67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새로운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혹은 거주한 영향으로 국가 내에서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 이러한 이주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음. 국내이주는 이동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출신국 내부에서의 이동임(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참조 항목: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상주지 (*habitual/usual residence*),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제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 농촌 간 이주자 (*rural-rural migrants*), 농촌도시이주자 (*rural-urban migrants*), 도시-농촌 이주자 (*urban-rural migrants*), 도시간 이주자 (*urban-urban migrants*)
- 68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local remedies, exhaustion of
 국제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국내의 구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며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이 법칙은, 한 국가의 국민이 타국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상황에 처해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그 국민이 속한 국가에서 받아들였을 때 준수하게 됨. 국제법정에 의지하기 이전에 폭력이 발생한 그 국가에서 국내(local)의 법적 틀 안에서 그들만의 수단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고려되어야 함. (1959년 '인터한델 사건'의 선결적 항변).
참조 항목: 관습법, 국제 (customary law, international), 외교적 보호 (diplomatic protection)
- 69 **국민**
 national
- 출생 혹은 귀화에 의해 한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로서, 그 공동체에 충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공동체가 부여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및 보호를 누릴 권한을 갖는 사람. 특정 국가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의 일원. 특정 국가의 국적자로서 그 유익을 누리는 자.
참조 항목: 국적 (nationality), 귀화 (naturalization), 제 3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
- 70 **국민처우**
 national treatment
- 이 기준에 의하면 비국민은 유입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 이상의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 그러나 국제법상 최소 기준의 국제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해당 국가의 기준이 사용될 수 없음.
참조 항목: 국제 최소기준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 71 **국외 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 박해, 불편화된 폭력, 무력충돌 또는 다른 인재들로 인해 자기 나라를 도망 나온 사람들. 이들은 종종 집단적으로 피난을 감. 이들은 때때로 '사실상의 난민(de facto refugees)'으로 불림.
참조 항목: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이재민 (displaced person),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실향민 (uprooted people)
- 72 **국적**
 nationality
- 한 개인과 국가간의 법적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가 1955년의 노테봄 판례(Nottebohm case)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적은) 사회적 사실로서의 결속, 즉 존재와 이해, 감정과 상호 권리와 의무 등의 순수한 연결을 그 근거로 삼는 법적 구속력임. 법에 의한 것이든 당국의 행위결과에 의한 것이든, 사실상 한 개인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사람들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1930년 국제법상 충돌에 관한 특정 질문에 대한 헤이그 협약 1 조에 따르면, "누구를 국민으로 할 것인지는 개별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해 결정함. 이 법률이 국제 협약, 국제 관습, 그리고 국적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적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법률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함." 국적과의 결합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국가가 그 국가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음. 국가의 인적 관할권 원칙에 근거하여, 국적은 이주와 연관된 특정 결과들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 기관 등에 의한 개인권리의 침해로부터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 (특히 외교적 보호 수단을 통해), 자국민을 자국의 영토로 받아들일 의무, 자국민 추방 금지와 같은 것들임.
참조 항목: 국적취득 (acquisition of nationality), 사실상 무국적 (de facto statelessness), 외교적 보호 (diplomatic protection), 이중/복수 국적 (dual/multiple nationality),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국민 (national), 귀화 (naturalization), 인적 관할권 (personal jurisdiction), 무국적상태 (statelessness)
- 73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 국적 상실은 개인의 행위(국적이탈, 개인에 의한 고의적인 국적 포기 혹은 타국적 취득에 의한 자동적인 국적 상실)나 혹은 국가의 행위(국적박탈)에 기인함. 국적박탈은 국가의 일방적인

- 행위로서 행정당국의 결정이든 법집행에 의한 것이든 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함. 비록 국적박탈에 대한 일률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국적박탈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발전시켜왔음. 이 근거는, 외국의 공무원 혹은 군대 조직에 가입하는 것, 외국인 차별에 동조하는 것, 특정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함. 비록 국적의 획득과 상실이 원칙적으로 국내 사법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가는 국적문제를 규제할 때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해야 함. 이는 세계 인권선언 15 조(2)의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예에서도 알 수 있음.
참조 항목: 국적취득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국적이탈자 (*expatriate*), 국적이탈 (*expatriation*), 국적 (*nationality*), 무국적상태 (*statelessness*)
- 74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참조:**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 75 **국적이탈**
expatriation 한 개인이 국적이탈자가 되는 과정. 국적이탈은 국적이탈자의 의도나 적용되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국적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 국적이탈이 한 나라에서 국민됨을 변경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완전히 정지됨.
참조 항목: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국적이탈자 (*expatriate*),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 76 **국적이탈자**
expatriate 자발적으로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거나 출신국의 국민됨을 포기한 사람; 다른 곳에 살고자 자신의 고국을 떠난 사람.
참조 항목: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국적이탈 (*expatriation*),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 77 **국적취득**
acquisition of nationality 출생에 의하여 국민이 아니었던 자가 개인의 체류신분 변동에 따른 신청 또는 국가영토가 타국으로 이양됨에 해당국가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것.
참조 항목: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국적 (*nationality*)
- 78 **국제 최소기준**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비국민은 한 국가가 국내적으로 결정한 권리와 상관없이 국제공법이 직접 규정하는 권리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 주권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비국민(또는 그러한 비국민이 소유한 재산)을 취급하면서 국제법이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기준들(예를 들면, 재판 거부, 부당한 지연 혹은 법정 접근 차단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제 최소기준을 위배한 것임.)을 따라야 함. 어떤 경우에는 국제 최소기준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 수준이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수준보다 높음.
참조 항목: 국민처우 (*national treatment*), 출국권 (*right to leave*)
- 79 **국제공항**
international airport 세관, 이민, 공공보건, 동식물 검역과 이와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는 국제 항공 출입 공항으로 국가가 지정한 자국 영내공항(1944년 민간항공에 대한 국제협약 부속문서 9번).
- 80 **국제법**
law of nations **참조:**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 81 **국제법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다양한 국가 법체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 국제법 질서로 편입된 규칙들로 이루어진 국제법의 법원.
참조 항목: 관습법, 국제 (customary law, international),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 82 **국제법 주체**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국제 법인격을 지닌 실체로서 그 타이틀에 수반되는 권리를 부여 받고, 국제법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함. 본래 국가만 국제법의 주체였으나, 오랜 연구 끝에 국제기구와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로 포함시킴. 이들의 법적 성격의 범위는 유동적이지만, 국가에 비해 항상 더 제한적임.
참조 항목: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국가 (State)
- 83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국가간 관계를 지배하는 법적 원칙. 현대 국제관계법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심지어 개인(인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과 같은 국제관계 참여자도 포함함. 국제법, 국제공법, 만민법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과거에는 국제법 혹은 만민법이라 불렸음.
참조 항목: 관습법, 국제 (customary law, international), 국제법 주체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 84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다루는 국내법의 분야로서 국내법체계 이외의 다른 법체계와 관련된 것이 이에 해당함. 국제공법의 분야가 아님.
- 85 **국제원조**
international assistance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물품지원, 금전적 기부, 훈련된 인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의 지원.
- 86 **국제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출신국 혹은 상주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동. 그러므로 국가간 국경을 가로지르게 됨.
참조 항목: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 87 **국제이주법**
international migration law
입국허가권, 구금권, 이민자 추방권, 인신매매와 밀입국 퇴치권, 국경보호권, 국적부여권과 같이 국가주권과 인권규약에서 파생된 이주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과 원칙, 이 두 가지 요소는 국가주권과 인권규범을 의미하므로 국제이주법의 두 축을 구성함. 국제이주법의 규약들은 인권법, 인도법, 노동법, 난민법, 영사법, 무역법, 해양법 등 다양한 법률분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참조 항목: 국제법(공법) (international law (public)), 이주 (migration)
- 88 **국제적 보호**
international protection
참조: 사실상 보호(de facto protection), 보호(Protection)
- 89 **권리유예**
derogation
특정 상황에 있어 권리행사의 제약 및 유예. 예를 들면,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시" 규약이 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본 규약에 비준한 국가는 긴급사태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에 한해서 현재 규약이 정하는 바대로 국가의 의무로부터 권리유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 상 규정된 국가의 다른 의무들과 일치하지 않고, 인종, 피부색,

- 성별, 언어, 종교나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행되어야 함. 권리유예는 또한 법의 효용성 범위를 제약하거나 효력을 약화시키는 추후조치를 통해 법률의 일부분을 폐지 또는 폐기하는 행위도 지칭함.
참조 항목: 인권 (*human rights*), 절대불가침인권 (*non-derogable human rights*)
- 90 **귀화**
naturalization 한 국가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비국민에게, 공식적인 행위를 통해 국적을 부여함. 국제법은 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가들이 자국민이 아닌 자가 국적신청을 할 경우 이들을 귀화시킬 권한을 가짐을 인정함.
참조 항목: 국적취득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민 (*national*), 국적 (*nationality*)
- 91 **귀환**
return 일반적 의미로, 떠난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 혹은 과정. 귀환은 국내이재민이나 제대한 전투원이 돌아가는 경우와 같이 한 영토 내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이주노동자, 난민, 비호신청자, 그리고 유자격 국민처럼 유입국 (경유국이든 목적국이든 관계없이)과 출신국 사이의 이동일 수도 있음. 귀환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자발적, 강제적, 지원받은 그리고 자력 귀환과 같은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고, 귀환의 주체에 따라 난민의 본국송환과 같은 하위범주로 나눌 수도 있음.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재입국허가협정 (*readmission agreement*), (국외로의) 재이민 (*re-emigration*), 강제송환 (*refoulement*), 재통합 (*reintegration*), 재통합(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재통합 (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재통합(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92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 보통 다른 국가에서 최소 1 년 이상 거주한 이주자가 출신국 혹은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행위. 이러한 형태의 귀환은 자발적일 수도, 비자발적일 수도 있음. 귀환 이주는 자발적 송환을 포함함.
참조 항목: 순환이주 (*circular migration*), 강제귀환 (*forced return*), 재통합 (*reintegration*), 재통합(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재통합(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재통합(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93 **규약**
covenant **참조:** 조약 (*treaty*)
- 94 **그린카드**
green card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비국민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영주권카드라고도 하며, 이는 해당 비국민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권리를 가진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임.
참조 항목: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 95 **근거가 충분한 (박해)공포** 1951 년 난민 협약에서 난민을 정의하는 핵심적 요소. 공포의 충분한 근거는 주관적 요소(박해에 대한 공포)와 객관적인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요소(공포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음. 1951년 협약에 의하면, 박해는 다음의 5가지 구체적인 근거 중 하나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함: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및 정치적 의견. <i>참조 항목: 박해 (persecution), 난민 (refugee)</i>
96	기국 flag State	기국은 선박의 국적국임. 기국은 해당 국적이 아래 있는 선박들이 국제 관습법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i>참조 항목: 공해 (high seas), 해상구조 (rescue at sea), 선박 (vessel)</i>
97	기만/사기 deception	이주의 맥락에서는 이주자에게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이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도 지칭함. <i>참조 항목: 사기 (fraud), 위조문서 (fraudulent document),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i>
98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넓은 범위의 인권 중 일부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사회 진보 촉진과 생활 수준 개선을 고려할 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견해. 특정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탈금지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함. 1966년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4조(1)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공공의 비상 시" 권리유예를 용인하고 있지만, 생명권(6조), 고문금지(7조), 노예제와 노예상태(8조(1), (2)), 계약 위반에 대한 구금 금지(11조), 형사 책임 소급적용 금지(15조), 법 앞에 인정(16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에 대해서는 권리유예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유기적인 것으로서, 공정하고 동등한 방법으로,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다루어져야 함. <i>참조 항목: 인권 (human rights), 절대불가침인권 (non-derogable human rights), 고문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노예제 (slavery), 고문 (torture)</i>
99	기소 prosecution	정부가 피고에 대하여 범죄 행위 또는 범죄 의사에 대해 집행하는 형사절차. 넓게는 민사든 형사든 범죄 행위나 범죄의사를 보유하는 것에 적용.
100	기술 공조 technical cooperation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행위자가 보통 공공분야기능의 중점 주제(예: 법과 절차의 개발, 기본조직의 디자인과 수단 지원 혹은 기술적 증진)에 대해 정보와 전문적 기술을 공유하는 공조행위. <i>참조 항목: 성공사례 (best (effective) practices),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i>
101	기업 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	일시적으로 본사의 해외지점(지점, 부서, 사무소, 합작회사 등)에 임시로 파견된 회사의 정규직원.
102	기후난민 climate refugee	<i>참조: 환경 이주자 (environmental migrant), 환경이재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i>

L

- 103 **난민**
refugee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조(A)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A조(2)). 1969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난민협약은 난민을 "외부의 공격, 점령, 외국의 지배 혹은 출신국 및 국적국의 일부 혹은 전부에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에 의하여" 국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함. 이와 유사하게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은 "생명, 안보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공격, 내분, 광범위한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의 환경으로 인하여" 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함.
참조 항목: 신청자 (applicant),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이재민 (displaced person), 강제이주 (forced migration), prima facie (반증이 없는 한), 부유난민 (refugees in orbit), 난민지위 인정절차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경유난민 (refugees in transit), 현지 체재 중 난민 (refugees sur place), 실향민 (uprooted people)
- 104 **난민(반증이 없는 한)**
refugee (prima facie)
- 국가 혹은 유엔난민기구가 그 사람의 출신국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이때의 객관적 기준은 그 사람이 해당하는 난민 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가정을 정당화 함.
- 105 **난민(위임)**
refugee (mandate)
- 접수국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협약당사국에 의한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난민기구 규정 기준에 부합하고, 고등판무관에 의해 유엔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
참조 항목: 난민 (refugee)
- 106 **난민지위 인정절차**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 해당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 그리고/혹은 유엔난민기구가 사용하는 절차.
참조 항목: 비호 (asylum), 난민 (refugee)
- 107 **납치**
kidnapping
-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유괴 혹은 구금. 대개 납치된 피해자나 혹은 제 3자로부터 경제적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짐. 납치는 보통 개별 국가의 형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특정 납치(예, 해적에 의한 납치)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참조 항목: 유괴 (abduction),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108 **노동이주**
labour migration
- 취업을 목적으로 모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것. 노동이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법의 적용을 받음. 어떤

국가들은 타국으로 나가는 노동이주를 규제하거나 자국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참조 항목: 노동이주 쌍무/양자 협정 (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s), 순환이주 (circular migration)

109 노동이주 쌍무/양자 협정
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s

노동이주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나타내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공식 협정. 이 용어는 또한 국가, 국가기관, 또는 고용주단체 등이 체결한 노동자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덜 공식적인 협약 등을 의미하기도 함.

참조 항목: 쌍무적인/양자간 (bilateral), 노동이주 (labour migration), 조약 (treaty)

110 노동허가증
work permit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입국 내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승인하는, 국가의 주관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법적 서류.

참조 항목: 신청자 (applicant), 허가(증) (permit)

111 노예상태
servitude

자유를 박탈당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

참조: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착취 (exploitation), 노예제 (slavery),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12 노예제
slavery

소유권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대상의 신분 또는 상황 (1953 년 부속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26 년 노예협약 1 조). 노예제란 타인의 삶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 강압, 이동제한, 고용주를 떠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로 규명됨. (예: 전통적으로 노예를 재산시하는 제도 (Chattel), 예속된 노동, 농노제, 강제노동,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노예).

참조 항목: 예속된 노동 (bonded labour), 아동 노동 (child labour),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13 녹색 국경
green border

검문소 사이에 있는 국가의 육지 국경을 가리켜 부르는 용어. 수로 국경(강 또는 해안선)은 '청색 국경'으로 불리기도 함.

참조 항목: 국경 (border), 검문소 (checkpoint)

114 농촌 간 이주자
rural-rural migrants

한 농촌지역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국내이주자로 상인, 목축민 그리고 농업 노동자의 장단기 이동도 포함됨.

참조 항목: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농촌도시이주자 (rural-urban migrants), 도시-농촌 이주자 (urban-rural migrants), 도시간 이주자 (urban-urban migrants)

115 농촌도시이주자
rural-urban migrants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내이주자로 종종 빈곤, 낮은 농업소득, 저생산, 인구증가, 물자부족, 분절, 그리고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 환경악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회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이주함.

참조 항목: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농촌 간 이주자 (rural-rural migrants), 도시-농촌 이주자 (urban-rural migrants), 도시간 이주자 (urban-urban migrants)

C

- 116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문화적 다양성이 주는 유익들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극대화하는 통합적 접근. 이주자들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협 없이, 그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 행동에 있어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된 채로 남아있음.
- 117 **다자간**
multilateral
다자간은 각종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이 포함됨을 뜻함.
참조 항목: 쌍무적인/양자간 (bilateral), 조약 (treaty)
- 118 **단계적 이주**
step migration
타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 국가 내에서 다른 한 장소 혹은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나 궁극적 혹은 최종 목적국으로 이동하기 전 한 국가에서 다른 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
- 119 **단기 이주자**
short-term migrant
자신이 상시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타국에 이동하여 최소 3 개월 이상 최대 1 년 미만 거주하는 사람. 타국으로의 이동목적이 여가활동, 휴가, 친구 혹은 친척 방문, 사업이나 치료일 경우는 예외. 국제이주통계에서는 단기 이주자의 상주국을 거주 기간 동안의 목적국으로 간주함.
참조 항목: 장기 이주자 (long-term migrant),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임시이주노동자 (temporary migrant workers)
- 120 **대체이주**
replacement migration
다른 국가로 떠난 자국 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 공백을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 출신 노동자가 채울 때 발생하는 국내이주, 혹은 한 국가가 저출산과 낮은 사망률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이주.
- 121 **더블린 제 2 규약**
Dublin II Regulation
2003 년 2 월 18 일 제정된 유럽이사회 규칙 제 343/2003 호는 회원국이 해당국 내에 체류하는 제 3 국 출신자의 비호신청을 심사할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더블린 협약을 대체하는 '더블린 제 2 규약'으로 명명함. (더블린 협약은 1990 년 6 월 15 일 체결된 유럽연합(EU) 회원국간의 협약으로 협약국에 체류 중인 자의 비호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음을 결정.) 더블린 제 2 규약 하에서, 회원국은 객관적이고 계층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토에 체류중인 자의 비호신청을 심사해야 함. 이 체계는 "망명신청 쇼핑" (동일한 자가 여러 국가에 비호신청을 제출함)을 방지함과 동시에 각 비호신청이 오직 한 회원국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됨.
참조 항목: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비호권 (right of asylum), 난민 (refugee), 부유난민 (refugees in orbit), 쉥겐협정 및 협약 (Schengen Agreement and Convention)

- 122 **도시-농촌 이주자**
urban-rural migrants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정주할 목적으로, 혹은 농촌도시이주자들의 귀환 이주로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국내 이주자.
참조 항목: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농촌 간 이주자 (rural-rural migrants), 농촌도시이주자 (rural-urban migrants), 도시간 이주자 (urban-urban migrants)
- 123 **도시간 이주자**
urban-urban migrants 주로 고용을 목적으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국내 이주자.
참조 항목: 국내이주 (internal migration), 농촌 간 이주자 (rural-rural migrants), 농촌도시이주자 (rural-urban migrants), 도시-농촌 이주자 (urban-rural migrants)
- 124 **도주**
absconding 법원에 출두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의 보호관리를 회피하려는 행위.
- 125 **도피처**
safe haven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전투병 혹은 비전투병"과 "교전과 무관한 민간인"을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중립지대 (1949년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15조).
참조 항목: 비호 (asylum), 중립지대 (neutralized zones)
- 126 **동화**
assimilation 한 종족 또는 사회집단, 통상적으로 소수자 집단이 다른 사회집단에 적응하는 것. 동화는 언어, 전통, 가치, 관습, 행동 또는 근본적인 중요 이해관계 등에 있어 소수자 집단이 독자성을 잃고 다른 사회로 포섭됨을 포함. 한 집단의 전통적인 문화양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동화는 한 집단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만듦. 동화는 문화변용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임.
참조 항목: 문화변용 (acculturation), 문화 (culture), 포용 (inclusion), 통합 (integration)
- 127 **두뇌유입**
brain gain 재능 있고 숙련된 사람들이 제 3국에서 유입국으로 이주하는 현상. 역 두뇌유출이라고도 불림.
참조 항목: 두뇌유출 (brain drain), (국내로의)이민 (immigration), 재통합(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 128 **두뇌유출**
brain drain 재능 있고 숙련된 사람들이 출신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현상을 가리키며, 출신국 내 기술 자원의 고갈을 유발.
참조 항목: 두뇌유입 (brain gain), (외국으로의)이민 (emigration), 유자격 국민 (qualified national), 역두뇌유출 (reverse brain drain)
- 129 **등록 이주노동자**
documented migrant worker 취업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체류하면서 국내법과 그 국가가 비준한 국제적 합의(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5조(a))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의 가족.
참조 항목: 등록 이주자 (documented migrant),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30 **등록 이주자**
documented migrant
- 입국조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이주자.
참조 항목: 등록 이주노동자 (*documented migrant worker*),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31 **디아스포라**
diasporas
- 디아스포라의 넓은 정의는 출신국을 떠났으나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네트워크, 협의체, 공동체임. 이 개념은 정착한 해외거주 공동체, 단기 해외 이주노동자, 유입국의 국적을 지닌 이주자, 이중 국적자, 2, 3 세대 이주자를 포함함.
참조 항목: 집단이동 (*exodus*), 유자격 국민 (*qualified national*)

ㄹ

132 리셉션 센터
reception centre

참조: 유치소 (*holding centre*)



- 133 **면제**
waiver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법적 권리나 이점을 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포기함. 이민법은 주어진 사례에 있어서 적절한 기관에 권위를 부여하여 특정 법적 요건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입국을 불허하는 특정 법적 요건 또는 근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134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합법 또는 불법)이주의 흐름에 있어 목적지가 되는 국가.
참조 항목: 목적국/수용국/취업국 (*host country*), 수용국 (*receiving country*), 제 3 국 (*third country*)
- 135 **목적국/수용국/취업국**
host country
참조: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수용국 (*receiving country*), 취업국 (*State of employment*)
- 136 **무국적상태**
statelessness
어떤 국가에서도 국내법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개인의 상태. 무국적의 원인으로는 법률충돌, 영토이전, 혼인법, 행정관례, 차별, 낮은 출생신고율, 국적박탈(국가가 개인의 국적을 박탈할 경우), 국적포기(개인이 국가의 비호를 거부할 경우)가 있음.
참조 항목: 사실상 무국적 (*de facto statelessness*), 국적박탈 (*denationalization*), 국적 상실 (*loss of nationality*), 국적 (*nationality*), 포기 (*renunciation*)
- 137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1954 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1 조) 이와 같이 무국적자는 국적에 기인한 권리, 즉 국가의 외교적 보호, 거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 여행 시 귀환할 수 있는 권리가 결여되어 있음.
참조 항목: 사실상 무국적 (*de facto statelessness*), 국적 (*nationality*)
- 138 **무력충돌**
armed conflict
"전쟁상황임이 당사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가간에 선포된 전쟁 또는 다른 무력충돌" (1949 년 제네바 협약 I-IV 2 조). "무력충돌은 국가간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국가와 조직화된 무장 세력 또는 국가 내의 조직화된 무장 세력간의 장기간의 무력폭력이 있으면 존재함."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 재판부의 검사단 대 타딕 케이스 (*Prosecutor v. Dusko Tadic*)).
참조 항목: 무력충돌에 관한 법(국제)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 139 **무력충돌에 관한 법(국제)**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무력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들의 체계.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국가간 무력충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은 국가간 무력충돌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
참조 항목: 무력충돌 (*armed conflict*), 민간 억류자 (*civil detainees*), 인도법(국제)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 140 **무료로 행하는(라틴어)**
pro bono (latin)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적 서비스나 이와 관련된 것을 의미함.
- 141 **무허가/불법 입국**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수용국에 적법하게 입국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따르지 않고 국경을 넘는 행위" (2000 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3 조(b)).
참조 항목: 불법 입국 (illegal entry),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142 **문화**
culture 사회 집단의 상징적 구성,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한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용어. 이는 또한 관습, 신념, 언어, 사상, 미학적 취향, 기술지식, 가치체계, 생활방식의 집합을 지칭하기도 함.
참조 항목: 문화변용 (acculturation), 문화 교육 (cultural orientation)
- 143 **문화 교육**
cultural orientation 이주자들에게 유입국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역사, 지리, 언어가 포함될 수 있음.
참조 항목: 문화 (culture), 통합 (integration)
- 144 **문화변용**
acculturation 특히, 이주와 교역을 통해 다른 문화집단간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발생하는 문화 관습(사상, 언어, 가치, 표준, 행동, 제도)의 일련의 변화. 문화변용은 한 집단이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공공인 영역에서는 지배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음. 문화변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함.
참조 항목: 동화 (assimilation), 문화 (culture), 통합 (integration)
- 145 **미등록 이주 노동자**
non-documented migrant workers *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46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입국, 체류, 혹은 고용을 승인 받지 않은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참조 항목: 등록 이주노동자 (documented migrant worker),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 147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 다음에 해당된 자를 포함함: a) 적법한 서류 없이 비밀히 자국 이외의 나라에 입국하는 자 b) 부정한 서류를 이용하여 입국 혹은 체류하는 자 c) 적법하게 들어 온 후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이거나, 입국조건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남아있는 자.
참조 항목: 불법 입국 (illegal entry),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무허가/불법 입국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 148 **미성년자**
minor 해당 국가의 법이 규정한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 아직 특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함.
참조 항목: 아동 (child), 이산자녀 (separated children), 보호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 149 **민간 억류자**
civil detainees 국제 무력충돌에 관한 법에 의거하면, 안전이라는 긴급한 이유로 충돌 당국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 때로는 구금 상태에 있는 중립국 시민을 의미.
참조 항목: 무력충돌에 관한 법(국제)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보호되는 사람들 (protected persons)
- 150 **밀입국**
smuggling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혹은 다른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닌 국가로 사람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하는 조달행위(2000 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의정서 3 조(a)). 밀입국은 인신매매와는 달리 착취나 강압, 인권유린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음.
참조 항목: 자산 몰수 (assets forfeiture), 이산화탄소 감지기 (carbon dioxide sensors), 불법 입국 (illegal entry),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s), 감지기 (sensors), 밀입국 알선자 (smuggler (of migrants)),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151 **밀입국 알선자**
smuggler (of migrants)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사람을 운송시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중개인.
참조 항목: 밀입국 (smuggling)
- 152 **밀입국자/밀입국이주자**
smuggled person/migrant 타인에게 재정적 혹은 물질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 불법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주자.
- 153 **박해**
persecution 난민의 맥락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하는 것. 박해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나 종종 체계적이며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인권 침해 및 다른 종류의 심각한 위해를 포함함. 차별이 항상 박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차별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몇몇 차별적 조치들의 영향이 축적되어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 박해로 이어질 수도 있음.
참조 항목: 차별 (discrimination), 현지 체재 중 난민 (refugees sur place), 근거가 충분한 (박해)공포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 154 **반증이 없는 한(라틴어)**
prima facie (latin) 라틴어 표현으로, '처음 보기에'라는 의미,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처음 보기에 확실한 것을 말함. 반증되거나 논박되지 않는다면 가정할 수 있거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 이주의 맥락에서는, 이민자 지위 신청에 대하여 모든 기본적인 요구사항(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이나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처음 보기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예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참조 항목: 난민 (refugee), 난민(위임) (refugee (mandate)), 난민(반증이 없는 한) (refugee (prima facie)), 선별 (screening)

ㄴ

- 155 **발효**
entry into force
- 조약의 모든 규정이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순간.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 24조에 따르면, 조약의 발효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협상 당사국이 동의한 방식과 날짜에 발생하고, 그와 같은 조항 혹은 합의가 없다면, 모든 협상국들이 구속력을 갖는 것에 동의하자마자 발생함. 이미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뒤에 어느 국가가 조약에 참여할 경우, 그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약은 바로 그날로 그 국가에서 효력을 가짐. 예를 들어, 상품협정에서나 혹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에 여러 당사국들이 마치 그것이 발효된 것처럼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처럼, 임시적용은 조약의 조건에 따를 수도 있음.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5조(1)).
참조 항목: 조약 (treaty)
- 156 **방문자**
visitor
- 이주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전문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영토 내에 한시적으로 머물 것을 허가 받은 비국민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됨.
참조 항목: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여행 (tourism), 여행자 (traveller)
- 157 **배상**
restitution
-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 혹은 지위에 반환 또는 복구;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다른 사람에게 가한 잘못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보상.
- 158 **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난민지위기준을 만족시켰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국제난민보호의 혜택을 주기를 거부하는 법적 규정. 1951년 난민협약에서, 배제조항은 1D, 1E, 그리고 1F 조에서 발견됨.
참조 항목: 중지 조항 (cessation clauses), 전쟁 범죄 (war crimes)
- 159 **배출-흡입 요인**
push-pull factors
- 이주는 종종 "배출-흡입 모델"이라는 용어로 분석됨. 배출 요인은 이주자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가령 경제, 사회, 또는 정치적 문제에 의해)을 말하며, 흡입 요인은 이주자를 목적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함.
- 160 **벌칙**
penalty
- 처벌. 이주의 맥락에서 벌칙은 대개 벌금을 의미하나, 추후 입국 금지를 의미하기도 함.
- 161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 국제법 규범 상, 형사상 위법행위에 속하는 행동. 국제적 범죄의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국제적 범죄로 인정함: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종차별, 테러리즘, 노예제와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행위, 마약 밀매, 해적행위, 인신매매나 밀입국; 인질행위 등. 개별국가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거나 관련국에 인도할 의무를 짐.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국제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음 (예:

-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참조 항목: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살해 (*genocide*), 테러리즘 (*terrorism*), 고문 (*torture*),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전쟁 범죄 (*war crimes*)
- 162 **법률적으로, 법률상(라틴어) de jure (latin)** 권리 또는 법에 의해 존재함.
참조 항목: 실제적으로, 사실상 (*de facto*)
- 163 **법적 문서 instrument** 계약 혹은 조약과 같이 공식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서화 된 서류. 조약의 비준, 수용, 승인 혹은 가입의 경우 해당 국가가 동의한 조약의 범위를 이 서류에 의해 설정함.
참조 항목: 비준 (*ratification*)
- 164 **보증 guarantee** 타인이 채무를 다하지 못할 시 해당인의 빚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합의. 이주 맥락에서 보증은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하겠다는 내용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비국민에게 요구되기도 함.
참조 항목: 부양서약서 (*affidavit of support*), 보증금 (*bond*), 재정보증 (*sponsorship*)
- 165 **보증금 bond**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국가가 비국민으로 하여금 그가 요구 받은 특정한 행위(통상적으로 해당국으로부터의 출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일정액의 돈. 출국 보증금은 사증 발급 시나 입국 시에 징수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외국인이 본국에 소재한 해당국의 영사관을 방문했을 시 등 출국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환불됨. 보증금은 구금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지불되기도 함.
참조 항목: 보증 (*guarantee*)
- 166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거하여 한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허가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국에 의해 1951년 난민 지위 협약에서 정한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
참조 항목: 보호 (*protection*)
- 167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국가재판소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혹은 재판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할 수 있음. 보편적 관할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됨. 1999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서문은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지함: “모든 국가는 국제 범죄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관할권의 목적은 특정범죄, 특히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고문, 사법권 밖의 사형 집행, 실종등과 같은 범죄의 억제를 위해 국제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국제 공동체들의 관점은 이러한 범죄는 매우 심각하여 전 인류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임.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주권 (*sovereignty*), 전쟁 범죄 (*war crimes*)

- 168 **보호**
protection
- “보호의 개념은 성문화되고 적절한 법, 예를 들어 인권법, 국제인도법, 이주법과 난민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든 행위를 아우름. 인권과 인도주의적 기구는 공정한 방법(인종, 국적, 민족, 언어, 젠더에 기초하지 아니하고)으로 이러한 행위를 수행해야 함” (기구나 상임위원회). 보호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 협정서에 의거하거나 활동에 의해 임무를 부여 받은 기구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에 제공됨. 이와 같은 보호는 다음 법적 문서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짐: 1951년 난민 협약, 1949년 제네바 협약, 1977년 의정서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발의권, 국제이주기구의 실질적 보호, 국제노동기구 협약들, 인권과 관련된 법적 문서들.
참조 항목: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 사실상 보호 (de facto protection), 역량강화 (empowerment), 인간 안보 (human security)
- 169 **보호되는 사람들**
protected persons
- 무력충돌이 있는 가운데, 적국의 군인이 아니면서 분쟁 국가의 영토에서 발견된 혹은 그와 같은 국가에 의해 점거된 영토에서 발견된 사람들. 보호되는 사람들은 분쟁 국가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영토를 떠날 권리를 가짐. 분쟁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특정 환경 하에서 가택 연금 및 구금뿐만 아니라 거소지 이전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여행 금지 조치를 통해 보호 처분 인물들의 이동을 제한할 법적 권리를 가짐.
참조 항목: 민간 억류자 (civil detainees),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무력충돌에 관한 법(국제)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 170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unaccompanied minors
- 참조: 보호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 171 **보호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부모, 후견인 혹은 법이나 관습에 의해 미성년자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미등록 성인 비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구금이나 다른 제재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 미동반 아동은 국경관리자에게는 난제임.
참조 항목: 아동 (child), 미성년자 (minor), 이산자녀 (separated children)
- 172 **복합적 이주 흐름**
mixed flows
- 난민, 비호신청자, 경제적 이주자 및 그 외의 이주자 유형을 포함한 복합적인 인구이동. 전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인구이동과 반대의 의미로 사용됨.
- 173 **본국송금**
repatriation of funds
- 이주의 맥락에서 이주자가 출신국으로 보내는 모든 금전적 이동.
참조 항목: 송금 (remittances)
- 174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77년 의정서,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 부속규칙, 인권에 관련한 법적 문서들 그리고 국제 관습법과 같은 여러 국제법에서 명시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난민, 전쟁 포로, 혹은 민간인 억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 본국으로 돌아갈 선택권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개인을 구금하고 있는 권력에 부여되는 것은 아님. 국제무력충돌에 관한 법률상

- 본국송환은 구금하는 국가가 적합한 사람(군인이나 민간인)을 석방할 의무와 출신국의 전투가 종결되면 석방된 사람들을 받아들일 의무를 포함함. 조약 법이 이러한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행위자들은 전쟁 포로와 민간 억류자들의 본국송환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음. 본국송환은 국제적 위기시의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공무원, 그리고 국외거주자와 이주민들에게도 적용됨.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귀환 (*return*), 환국권 (*right to retur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175 **부양서약서**
 affidavit (of support)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선서한 내용을 서면으로 증빙하는 공증된 법률 서류.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부양서약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이주자의 입국을 허가 받기 위하여 그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불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며, 주로 이주자가 고령이거나 질병환자로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에 요구됨.
 참조 항목: 보증 (*guarantee*), 재정보증 (*sponsorship*)
- 176 **부유난민**
 refugee in orbit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직접 돌려보내지지는 않지만 접수국에 의하여 비호신청이 거부되거나, 비호신청을 받아들 줄 국가를 찾지 못하여 접수국과 인접국 사이를 떠돌아 다니거나, 혹은 국가들에 의해 되돌려 보내지면서 계속 비호신청을 하는 자.
 참조 항목: 비호 (*asylum*), 난민 (*refugee*)
- 177 **불법 이주**
 illegal migration 참조: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 178 **불법 이주자**
 illegal migrant 참조: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179 **불법 입국**
 illegal entry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채 국경을 넘는 행위” (2000 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3 조(b)).
 참조 항목: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밀입국 (*smuggling*), 무허가/불법 입국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 180 **불법입국**
 unlawful entry 참조: 불법 입국 (*illegal entry*), 무허가/불법 입국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 181 **불법체류외국인**
 illegal alien 참조: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182 **비국민**
 non-national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
 참조 항목: 외국인 (*foreigner*), 제 3 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
- 183 **비밀 이주**
 clandestine migration 이민 시 필요 조건들을 위반하고 몰래 이루어진 이주. 비시민권자가 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위반하거나,

- 합법적으로 입국 후에 이민법을 어기고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음. 되도록이면 포괄적 용어인 "비정규 이주"로 지칭되어야 함.
 참조 항목: 등록 이주자 (*documented migrant*), 불법 입국 (*illegal entry*),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184 **비인도적 처우**
 inhuman treatment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가혹행위. 인권 유린과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 조) 국제형사법 위반(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조; 1949 년 제네바 협약 3 조)에 해당함.
 참조 항목: 고문 (*torture*)
- 185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난민, 전범, 혹은 민간 억류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국 영토로 돌려보내지는 것. 본국송환은 (국가주권에 속하는 추방이나 강제퇴거와는 달리) 개인의 권리이고, 따라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귀환당사자가 국적을 둔 국가도, 해당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혹은 그 사람을 억류하고 있는 국가도, 당사자가 난민이든, 전쟁포로이든,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본국송환을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본국송환을 거부하는 전쟁포로나 민간 억류자나 난민은, 특히 그가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에 의한 공포로 인해 귀환을 거부했다면, 강제송환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망명이 받아들여져야 함.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강제귀환 (*forced return*), 강제송환 (*refoulement*),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귀환 (*retur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186 **비정규 상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in an irregular situation
 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87 **비정규 상황 이주자**
 migrant in an irregular situation
 참조: 행정상 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88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이민 송출국, 경유국 그리고 수용국의 법적 규범을 벗어나 발생한 이동. 비정규 이주에 대해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음. 최종 목적국의 관점에서 비정규 이주는 이민관련법규가 요구하는 해당국의 입국, 체류, 취업에 필요한 허가나 서류 없이 목적국가에 불법으로 입국, 거주 혹은 취업했음을 의미함. 송출국의 관점에서 비정규라 함은 사람이 유효한 여권 혹은 여행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출국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는 경우에 발견됨. 그러나 "불법이주"이라는 용어는 이주자의 밀입국이나 인신매매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됨.
 참조 항목: 비밀 이주 (*clandestine migration*),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 무허가/불법 입국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189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 무허가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인해 경유국이나 수용국에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 이 정의는 특히 합법적으로 경유국 혹은 수용국에 입국하였으나 허가 받은 기간보다 오래 머물렀거나 입국 이후 불법 취업한 자(비밀/미등록 이주자 혹은 비정규상황의 이주자도 지칭)를 포함. "비정규"라는 용어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수반하여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법"이라는 용어보다 선호되는 표현.
참조 항목: 비밀 이주 (*clandestine migration*), 등록 이주자 (*documented migrant*), 불법 입국 (*illegal entry*),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190 **비준**
ratification
- 비준은 조약의 "수락" 또는 "승인"을 말함. 국제적 맥락에서 비준은 국가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조약을 따름으로 불리게 되는 국제적 법률조항임(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조(1)(b)). 비준서는 체약국간의 교환, 수탁자에의 기탁 또는 합의가 된 경우, 체약국이나 수탁자에게 통고의 경우 국가의 지속적 동의를 확정함(16 조). 자국 내에서, 비준은 국가가 스스로 조약이 담고 있는 의무사항을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냄. 자국의 헌법 절차는 정부가 조약의 구속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참조 항목: 가입 (*accession*), 법적 문서 (*instrument*),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to a treaty*), 조약 (*treaty*)
- 191 **비차별**
non-discrimination
- 단지 특정한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거부. 차별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는데, 예를 들어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6 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인 태생, 재산, 출생을 비롯한 기타 신분에 근거한 차별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만 한다" 고 기술하고 있음.
참조 항목: 차별 (*discrimination*), 인도주의 원칙 (*humanitarian principles*)
- 192 **비호**
asylum
- 한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난민의 권리를 근거로 자국영토에서 난민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한 형태. 이러한 보호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사유로 박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됨.
참조 항목: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비호권 (*right of asylum*),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난민지위 인정절차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비호국 (*State of refuge*)

- 193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자국에 머무르는 비국민에게 부여하는 보호. 해당 비국민의 출신국이 행사하는 사법권에 반하여 제공하는 보호로, 국제법상 인정된 일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참조 항목: 비호(외교적) (asylum (diplomatic)),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비호권 (right of asylum), 비호국 (State of refuge)
- 194 **비호(외교적)**
asylum (diplomatic) 국가가 어떤 국가의 박해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 외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타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피난처 또는 보호. 외교적 비호는 해당국의 재외공관 또는 공관장의 사택, 군함, 또는 항공기에서 제공될 수 있으나, 국제기구의 구내나 영사관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개인은 외교적 비호를 당연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참조 항목: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비호권 (right of asylum)
- 195 **비호국**
State of refuge 영토 내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
참조 항목: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비호권 (right of asylum)
- 196 **비호권**
right of asylum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 비호를 부여할 권리(국가는 국가의 자유 재량으로 해당영토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 비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비호를 부여 받을 권리. 비호는 비호가 신청된 영토의 국가 혹은 비호를 구하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음.
참조 항목: 비호 (asylum), 최초 비호국 (first country of asylum), 비호국 (State of refuge)
- 197 **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박해와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본국 외의 국가에서 안전을 구하는 자로서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만약 난민지위신청이 거절되면 인도주의적인 또는 기타 근거로 체류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한 불법체류자가 추방당하듯이 추방될 수 있음.
참조 항목: 신청 (application), 비국민 (non-national), 난민 (refugee), 비호권 (right of asylum)

人

- 198 **사기**
fraud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함.
- 199 **사면**
amnesty 체류가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부여되는 해당 국가에서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규화” 또는 “합법화” 해주는 일반 사면.
참조 항목: 합법화 (legalization), 정규화 (regularization)
- 200 **사법 심사**
judicial review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법과 행정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법원의 권한; 하급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에 관한 판결이나 법적인 판단에 대한 심사.
참조 항목: 항소 (appeal)
- 201 **사법권, 관할권**
jurisdiction 정부의 일반적 힘으로서, 자국 영토 혹은 정부의 권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 특히, 소송사유를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법적 권력 혹은 권한을 가리키기도 함.
참조 항목: 인적 관할권 (personal jurisdiction), 주권 (sovereignty)
- 202 **사법부**
judiciary 각종 법률의 해석과 사법제도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 법원 제도; 법관들의 조직체.
- 203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1951 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로 국적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치 않는 자 혹은 국적이 없는 경우,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
참조 항목: 국외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난민 (refugee)
- 204 **사실상 무국적**
de facto statelessness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국적국을 떠난 후, 국적국의 보호요청을 거부하거나 국적국이 해당인의 보호를 거부하는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사실상 무국적은 종종 난민과 관련되어 쓰여지는 용어.
참조 항목: 국적 (nationality), 무국적상태 (statelessness)
- 205 **사실상 보호**
de facto protection 기관의 목적실행을 위해 허용된 보호.
참조 항목: 보호 (protection)
- 206 **사실혼 배우자**
de facto partner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결합. 점점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이나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사실혼 배우자의 예로 지정된 기간 동안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온 양성애 또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됨.
참조 항목: 피부양자 (dependant)

- 207 **사업 방문자**
business visitor 사업 사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허락 받은 사람.
- 208 **사업 이주자**
business migrant 국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사업체에서 사전에 임명된 직책을
맡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허락 받은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가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자를
의미.
- 209 **사증**
visa 국가의 영토를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아닌
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에 대한 국가의 유관부서에 의한
보증임. 이는 발행 시점에 주무 부서는 소지자가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할 수 있는 비국민 범주 안에 든다고 신뢰함.
사증은 입국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국제적 관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되는 보안 특징이
인쇄되어 있는 기계판독가능 사증의 발행으로 변모하고
있음.
*참조 항목: 신청자 (applicant), 생체측정학 (biometrics), 사업
방문자 (business visitor), 신분증 (certificate of identity),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출국사증 (exit visa), 여권
(passport), 허가(증) (permit), 임시 여행 증명서류
(temporary travel documents), 경유사증 (transit visa),
여행서류(난민협약 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사증 발급 거부 (visa refusal)*
- 210 **사증 발급 거부**
visa refusal 주관기관에 의해 내려진 사증 발급 거부 결정. 특히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신청인의 불충분한 자원 등으로 거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참조 항목: 사증 (visa)
- 211 **사회적 자본 이동**
social capital transfer 국제이주자에 의해 출신국으로 이전되는 능력, 기술, 지식,
관습, 아이디어.
참조 항목: 송금 (remittances)
- 212 **상주국**
country of habitual/
usual residence 개인이 생활하는 국가, 즉 해당인이 일상의 휴식을 주로
보내는 장소가 있는 국가. 오락, 휴가, 친구와 친척 방문,
사업, 병원 치료 또는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해외 여행 때문에 개인의 상주국이 바뀌지 않음.
*참조 항목: 상주지 (habitual/usual residence), 거주(지)
(residence)*
- 213 **상주지**
habitual/usual residence 한 국가 영토 내에서 개인이 거주하며 일상적 휴식을 취하는
곳.
*참조 항목: 상주국 (country of habitual/usual residence),
거소지 (domicile)*
- 214 **상주지**
place of habitual
residence *참조: 상주국 (country of habitual/usual residence)*
- 215 **생체측정학**
biometrics 측정 가능한 생체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생체 식별자"는
개인의 고유한 생체적 표식 (예를 들면, 지문, 망막 스캔 또는
음성 스캔)을 암호화한 정보를 의미함. 몇몇 국가들은 여권,
사증 또는 거주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향상된 보안조치로
생체측정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참조 항목: 감시 제도 (*lookout system*), 여권 (*passport*), 사증 (*visa*)
- 216 **선박**
vessel
일반적으로 ""선박(vessel)""이라는 단어는 물에서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무배수량선과 비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선박을 지칭함"(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대한 협약, 3 규정)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덧붙여서, 국제 협약들은 협약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고 있음. 2000년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3 조(d)에 의하면, 선박(vessel)은 "물에서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무배수량선과 비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선박을 지칭하며, 전함, 해군 예비함 또는 정부가 소유, 운영하거나 장시간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함."
참조 항목: 기국 (*flag State*), 공해 (*high seas*), 해상구조 (*rescue at sea*)
- 217 **선별**
screening
특정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확인과정. 이주상황에서는 "반증이 없는 한" 신청 지위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는 (보통 피상적인) 예비심사.
참조 항목: *prima facie* (반증이 없는 한)
- 218 **선서**
oath
대개 (신 혹은 신들과 같이) 성스럽게 여겨지는 것 혹은 존경 받는 어떤 것들과 연관 지어 강조하며 엄숙하게 진실을 호소하는 것. 법적 맥락에서, 구술로 혹은 글로 선서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법적 구속력을 야기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서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됨.
참조 항목: 증인 (*witness*)
- 219 **선원**
seafarer
이주문맥에서 이 용어는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어부포함)를 말함.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c))
- 220 **선의**
good faith
신념 또는 의도가 정직하고, 사취하거나 비양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마음의 상태.
참조 항목: *bona fide* (선의의), 적법한 (*legitimate*), *mala fide* (악의로)
- 221 **선의의 신청자**
bona fide applicant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타국에 합법적인 목적과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입국하며 영사 또는 이민관의 판단으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입국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는 자.
참조 항목: 신청자 (*applicant*), *bona fide* (선의의),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 222 **선의의(라틴어)**
bona fide (latin)
"선의의", 허위나 사기가 없는, 진실한. 국제공법에서는, 국제법 주체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의무는 조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조약의 해석 시 그 취지에 의거한 해석을 하며, 법 남용을 하지 않으며,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 준수 등을 포함함.
참조 항목: 선의의 신청자 (*bona fide applicant*), 선의 (*good*)

faith), 적법한 (legitimate), mala fide(악의로)

- 223 **성공사례**
best (effective) practices
- 국제적·국내적으로 현존하는 규범이나 원칙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수단. 성공사례는 운영지침, 행동강령 또는 다른 연성법의 실현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실정법을 무력화하거나 실정법의 효력을 침해해서는 안됨. 성공사례는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거나, 이주자의 인권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주자 자신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나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참조 항목: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지역협의절차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연성법 (soft law), 기술 공조 (technical cooperation)
- 224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 성적 의도를 가지고 취약한 위치, 권력의 차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실질적 혹은 의도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행위. 여기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함으로써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225 **성폭행**
sexual assault
- 강제적 혹은 불평등하거나 강압적인 조건에서 성적본성에 대한 실질적 혹은 위협적인 육체적 침해.
참조 항목: 강간 (rape)
- 226 **소송**
suit
- 법원에서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하는 법적 행위.
- 227 **소수자**
minority
- 국제법상 통용되는 소수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소수자 집단은 한 국가 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보다 수적 열세에 있으며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고, 타 집단과 다른 인종·종교·언어적 특성을 가지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비록 암묵적이라 할지라도, 결속력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참조 항목: 소수자 보호 (protection of minorities),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s)
- 228 **소수자 보호**
protection of minorities
- 법 규정은 소수자와 그 같은 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권리 등을 보호함.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7조를 참조할 것.
- 229 **소환**
summons
- 배심원 혹은 증인으로서 법정 혹은 행정기관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
- 230 **속인주의/혈통주의**
jus sanguinis (latin)
- 자녀가 태어난 국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
참조 항목: 속지주의/출생지주의 (jus soli)
- 231 **속지주의/출생지주의**
jus soli (latin)
- 자녀가 태어난 국가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원칙 (그러나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을 수도 있음).
참조 항목: 속인주의/혈통주의 (jus sanguinis)

- 232 **송금**
remittances
비국민이 이주국에서 벌거나 획득하여 출신국으로 보내는 돈.
참조 항목: 본국송금 (repatriation of funds), 사회적 자본 이동 (social capital transfer)
- 233 **송출국**
sending country
해외에 상주 또는 임시거주를 목적으로 떠나는 사람의 본국.
참조 항목: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출신국 (State of origin)
- 234 **수반신청자**
derivative applicant
타인의 우선 신청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됨.
참조 항목: 아동 (child), 미성년자 (minor), 사실혼 배우자 (de facto partner),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
- 235 **수용국**
receiving country
목적국 또는 제 3 국. 귀환이나 본국송환의 경우, 출신국을 의미함. 대통령, 정부, 의회의 결정에 의해 매년 일정 수의 난민과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참조 항목: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출신국 (country of origin), 목적국/수용국/취업국 (host country), 제 3 국 (third country)
- 236 **숙련이주자**
skilled migrant
자신이 가진 기술로 인해 유입국의 입국허가 관련 특별대우를 받는 이주민 (그에 따라 체류기간, 직장변경, 가족재결합 관련 제약이 적음).
참조 항목: 고숙련/고급인력 이주자 (highly skilled/qualified migrant), 저숙련 그리고 반숙련 이주 노동자 (less/low-skilled and semi-skilled migrant worker), 유자격 국민 (qualified national)
- 237 **순 이주**
net migration
특정 기간 한 국가의 영토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와 그 국가 영토로부터 나가는 사람들의 수의 차이. "이주 대차(migratory balance)"라고 하기도 함. 이입자가 이출자보다 많을 때의 대차를 순이입이라고 하며, 이출자가 이입자보다 많을 때의 대차를 순이출이라고 함.
참조 항목: 총 이주 (total migration)
- 238 **순환이주**
circular migration
국가 간 사람들의 유동적 이동을 의미하며, 자발적이고 출신국과 목적국의 노동 수요와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 관계자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이동을 포함한다.
참조 항목: 노동이주 (labour migration)
- 239 **순회노동자**
itinerant worker
한 국가 내에 상주지가 있지만, 직업 때문에 단기 거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200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e)).
참조 항목: 국경 노동자 (frontier worker),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240 **셴겐협정 및 협약**
Schengen Agreement and Convention
1985 년 6 월 14 일 체결된 셴겐협정에 의하면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공동국경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협정 가입국과 미가입국, 혹은 제 3 국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한다는 데 동의함. 셴겐협약은 셴겐협정의 보완본이고, 자유로운 이동을

- 촉진하기 위한 협의서와 보호장치를 마련함. 이 협정과 협약, 이에 기초해 채택된 규칙들과 이와 관련된 협정이 모두 '셴겐 야키'를 구성함. 1999년 이후 이것은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에 대한 의정서에 의해 유럽연합의 제도적, 법적 틀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
참조 항목: *더블린 제 2 규약 (Dublin II Regulation)*
- 241 **승객**
 passenger
 보트, 버스, 차, 비행기, 기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나 그것을 운전하지는 않는 사람.
참조 항목: *운송 회사 책임에 관한 법 (carrier liability law)*
- 242 **시민**
 citizen
참조: *국민 (national)*
- 243 **시민권**
 citizenship
참조: *국적 (nationality)*
- 24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흔히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설명할 때 사용(예: 자기결정권.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비차별권. 남녀평등권. 생명권.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혹은 모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노예제나 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국가의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재판에 있어 평등할 권리. 형사상 죄의 결정을 위하여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급 금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다른 사람과의 결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조 항목: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권 (human rights), 권리유예 (derogation), 절대불가침인권 (non-derogable human rights)*
- 245 **신뢰성 평가**
 credibility assessment
 사증이나 기타 체류자격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가 제시한 정보가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 246 **신분증**
 certificate of identity
 정부가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에게 발급한 여권 외의 서류.
참조 항목: *임시 여행 증명서류 (temporary travel documents),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여행서류(난민협약 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사증 (visa)*
- 247 **신분증명 서류**
 identity document
 해당서류를 소지한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주무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
참조 항목: *출입국 카드 (arrival/departure card),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여권 (passport),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 248 **신청**
 application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제출된(통상적으로, 서면) 정부의 행정행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한 요청.
참조 항목: *청구 (claim)*

- 249 **신청 철회**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이전에 접수된 신청의 취소나 반환 요구, 또는 접수한 사람이 더 이상 요청된 혜택과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된 공무원에게 표명함.
참조 항목: 신청자 (*applicant*), 신청 (*application*)
- 250 **신청자**
applicant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난민지위, 사증, 노동허가증과 같은 행정행위 또는 법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람.
참조 항목: *bona fide* (선의의), 선의의 신청자 (*bona fide applicant*), 난민 (*refugee*), 사증 (*visa*), 신청 철회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노동허가증 (*work permit*)
- 251 **실제적으로/
사실상(라틴어)**
de facto (latin)
사실상 존재함. 형식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참조 항목: *de jure* (법률적으로/법률상)
- 252 **실향민**
uprooted people
지역공동체를 강제로 떠난 사람들, 박해와 전쟁으로부터 도피한 자들, 환경의 황폐화로 인해 강제로 이주한 자들, 고향에서는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혹은 해외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자들.
참조 항목: 환경 이주자 (*environmental migrant*), 환경이재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 국외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난민 (*refugee*)
- 253 **심리**
hearing
법정에서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 254 **심사**
adjudication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신청자가 사증, 난민자격 또는 다른 이민법상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 255 **심사관**
adjudicator
이주와 관련된 상황에서, 신청자가 사증, 난민지위 또는 기타 이민법 상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 받은 자.
참조 항목: 인터뷰 (*interview*)
- 256 **쌍무적인/양자간**
bilateral
두 당사자 또는 두 개의 국가가 관여하는.
참조 항목: 인도, 송환 (*extradition*), 다자간 (*multilateral*), 조약 (*treaty*)



- 257 **아동**
child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18 세 미만의 사람(1989 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1 조).
참조 항목: 미성년자 (minor), 이산자녀 (separated children), 보호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 258 **아동 노동**
child labour
아동에 의해 실시되는 모든 노동 행위를 가리키며 그들의 유년기, 잠재력, 존엄성을 박탈하고 건강, 교육,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해로운 것(1989 년 아동권리협약 참조).
참조 항목: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 노예제 (slavery),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259 **아동 입양(국제)**
child adoption
(international)
외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행위로, 아동이 출신국에서 입양 가족의 국가로 재이동한다는 의미를 포함.
참조 항목: 입양, 채택 (adoption)
- 260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
1989 년 아동권리협약과 1999 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 착취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경제적 착취(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 혹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 성적 착취(성적 학대,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의 유괴,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아동 착취.
참조 항목: 유괴 (abduction), 아동 노동 (child labour), 착취 (exploitation), 납치 (kidnapping),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261 **아웃소싱**
outsourcing
한 업체가 설계나 생산 같은 특정 사업 과정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는 것. 글로벌 리소싱(global resourcing)으로 지칭하기도 함.
참조 항목: 해외이전 (offshoring)
- 262 **악의로(라틴어)**
mala fide (latin)
부정직하게; 속이거나 속여서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참조 항목: bona fide (선의의), 조약 (treaty)
- 263 **안전한 제 3 국**
safe third country
비호신청자가 효과적인 난민 체제를 이용할 수 있었을 국가로서 난민신청국가에 도착하기 전 실제 머물렀던 국가.
참조 항목: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최초 비호국 (first country of asylum), 수용국 (receiving country), 안전한 출신국 (safe country of origin)
- 264 **안전한 출신국**
safe country of origin
비호신청자의 출신국이 난민을 (일반적으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안전한 출신국이라 여겨짐. 안전한 출신국이라는 개념은 접수국에서 특정그룹 혹은 범주를 비호신청자를 (심사 없이) 약식 거부하는 근거로 종종 사용됨.
참조 항목: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안전한 제 3 국 (safe third country)

- 265 **양도불가의**
inalienable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개인으로부터 박탈하거나, 양도, 할당, 혹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의 성격을 의미함.
- 266 **양육권, 보호관리**
custody
한 개인을 돌보고 관리할 책임.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을 친척이나 기타 후견인에게 부여할 수도 있음. 이주의 맥락에서 사법기관에 의해 억류된 개인은 '보호관리' 하에 있는 것임.
참조 항목: 행정상 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 구금 (*detention*)
- 267 **여권**
passport
발행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부 문서로, 그 소유자가 해당 국가로 재입국할 권리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여권은 외국 여행을 목적으로 쓰여 왔으며, 국내의 신분증명서류로는 사용되지 않음. 비록 여권의 증명 가치가 반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지라도,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적의 증거 혹은 증명서임.
참조 항목: 출입국 카드 (*arrival/departure card*), 신분증명 서류 (*identity document*),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여행서류(난민협약 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사증 (*visa*)
- 268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공적 혹은 사적 생활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여성에게 육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젠더 폭력 행위로, 이러한 피해나 고통에 대한 협박, 강요,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함"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1 조).
참조 항목: 젠더 폭력 (*gender based violence*)
- 269 **여성할례**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비의료적 이유로 여성성기를 절단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루어짐. 이것은 문화적이거나 다른 비의료적인 이유로 여성성기의 부분 혹은 전체를 자르거나 제거하여 봉합하는 것을 포함.
- 270 **여행**
tourism
개인이나 단체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가, 스포츠 및 새로운 것을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것. "여행이주"라는 말이 때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행은 여행자들이 상주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주의 형태가 아님.
참조 항목: 이주 (*migration*), 여행자 (*traveller*), 방문자 (*visitor*)
- 271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목적으로 주권 기관이 발행한, 신원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 여권과 사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여행 증명서류의 형태임. 어떤 국가는 신원증명카드나 거주 허가증과 같은 다른 서류도 인정함.
참조 항목: 신분증 (*certificate of identity*), 위조문서 (*fraudulent document*), 여행증명서 (*UN 에서 발행한*) (*laissez-passer*), 여권 (*passport*), 여행서류 (난민협약 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사증 (*visa*),
- 272 **여행서류 (난민협약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1951년 난민협약 28 조(1)에 따라 난민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의해 그 국가의 여권을 대신하여 난민에게

- 발행되는 여행 증명서류. 난민 협약은 여행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 “난민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한 강제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자국 내에 적법하게 머무르는 난민들이 국경 밖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협약의 부칙에서 명시한 조항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명국가들은 영토 내 어떤 난민들에게도 그러한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참조 항목:** 신분증 (certificate of identity), 여권 (passport), 난민 (refugee), 임시 여행 증명서류 (temporary travel documents),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사증 (visa)
- 273 **여행자**
traveller
어떠한 이유로든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는 사람.
참조 항목: 운송 회사 책임에 관한 법 (carrier liability law), 이주자 (migrant), 여행 (tourism), 방문자 (visitor)
- 274 **여행증명서(UN에서 발행한)**
laissez-passer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여행 증명서류로서, 본국의 국민이 특정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여권을 분실했거나 절도당했을 때) 혹은 그 국가가 보호해주기로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여권을 분실했거나 절도당했을 때, 외교적 수완이나 혹은 영사관이 부재한 특정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발행함. 이것은 또한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요원들에게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일컫음. 1946년 국제연합 특권 및 면제협약(7조 (24))에 따르면, “UN은 그들의 공무원에게 통행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음. 이러한 통행허가증은 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음.”
참조 항목: 임시 여행 증명서류 (temporary travel documents),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 275 **역두뇌유출**
reverse brain drain
참조: 두뇌유입 (brain gain)
- 276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지식과 기술, 태도의 강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량을 쌓는 것. 역량 구축은 협력 정부와 함께 실제 직접적으로 사업을 계획·수행하는 양상을 띠거나, 다른 경우 관계 당국이 제시한 원활한 대화를 통해 양자 혹은 다자간 협의 사항을 촉진시키는 형태를 띠 수도 있음. 모든 경우에 역량 구축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관리 실무의 표준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함.
참조 항목: 성공사례 (best (effective) practices), 기술 공조 (technical cooperation)
- 277 **역량강화**
empowerment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자산, 정책, 과정과 제도들에 대해 보다 큰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에 근거한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접근법(bottom-up approach)을 의미하며, 종종 위로부터 내려오는 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의미하는 보호와는 대비됨.
참조 항목: 인간 안보 (human security), 보호 (protection)
- 278 **연고 정착자**
ancestry based settlers
특정 국가와의 역사적, 인종적, 기타 유대로 인하여 입국이 허락된 외국인으로, 그와 같은 유대로 인하여, 즉시

- 장기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체류 중에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입국허가 후 단기간 내에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
참조 항목: 외국인 (*foreigner*), 국민 (*national*), 국적 (*nationality*), 비국민 (*non-national*),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 279 **연성법**
 soft law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
참조 항목: 성공사례 (*best (effective) practices*),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지역협의절차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 280 **연장**
 extension
 원래 유효기간을 지나서 사증 혹은 체류자격의 연장.
- 281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수용국에의 정착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민자들. 가족 재결합의 목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도 포함함.
참조 항목: 연고 정착자 (*ancestry based settlers*), 장기 이주자 (*long-term migrant*), 단기 이주자 (*short-term migrant*), 방문자 (*visitor*)
- 282 **영구적 해결책**
 durable solution
 난민의 처한 상황이 원만하고 영구적으로 해결되어 일상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통적으로 자발적 송환, 지역적 통합이나 재정착을 포함함.
참조 항목: 통합 (*integration*), 난민 (*refugee*),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재정착 (*resettlement*),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 283 **영사**
 consular officers
 외국에서 사증과 거주 문제에 있어 한 국가를 대변하는 정부 공무원.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1 조(d)에서는 영사를 “영사관의 장을 포함하여 영사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 규정.
참조 항목: 영사 기능 (*consular functions*), 영사 보호 (*consular protection*)
- 284 **영사 기능**
 consular functions
 영사는 송출국과 수용국에 거주하고 있는 송출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송출국과 수용국 간 상업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과학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5 조).
참조 항목: 영사 (*consular officers*), 영사 보호 (*consular protection*)
- 285 **영사 등록**
 consular registration
 국가의 영사 등록부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세부 정보(신분, 가족 관계, 거주지 등)를 등록하는 것. 이는 영사의 임무 수행을 촉진하고, 특히 영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참조 항목: 영사 기능 (*consular functions*), 영사 보호 (*consular protection*)
- 286 **영사 보호**
 consular protection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돕고 해당 지방 법원에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영사의 기능. 특히 체포, 수감, 재판 전 구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이주자들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주자는 영사 당국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받아야 함.

참조 항목: 영사 기능 (consular functions), 영사 (consular officers), 영사 등록 (consular registration)

- 287 (사전) 영사 지원 서비스 (pre-) consular support services
 사증 신청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전에 정부와 이주자를 돕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사증 신청서 양식 작성 지원. 사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 법적, 교육적, 직장 관련 서류들의 본인 확인. 서류 번역.
- 288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수용국에 의해 비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유입국 내에서 영구적으로(무제한적으로 혹은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
- 289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수용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비국민.
 참조 항목: 장기 이주자 (long-term migrant)
- 290 영토 내 비호 territorial asylum
 참조: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 291 영토관할권 territorial jurisdiction
 정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거나 혹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관할권. 또한 정부, 국가 법원, 혹은 하위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참조 항목: 사법권, 관할권 (jurisdiction), 주권 (sovereignty)
- 292 영해 territorial sea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선. 이 영해선은 12 마일을 넘지 못함.
 참조 항목: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공해 (high seas)
- 293 예속 bondage
 타인의 통제를 받는 상태.
 참조 항목: 예속된 노동 (bonded labour),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 294 예속된 노동 bonded labour
 경제적 이유(특히 대출 또는 가불 때문에 생긴 부채)로 인해 채권자에게 예속된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만일 속박을 당하는 근본적 이유가 빚 때문이라면, 노동자(부양 가족 및 상속자)는 빚을 갚는 시점까지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매여 있게 됨.
 참조 항목: 예속 (bondage),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295 옴부즈만 ombudsman
 시민 개개인들이 비정부 기관(회사나 대학교와 같은 기관) 혹은 정부기관(어떤 국가 관할권 하에서는 이주 관련 문제들도 다루기도 함)의 운영에 대해 가진 불만을 들어주고, 조사하며, 보고하도록 임명된 독립적인 공무원.
- 296 외교관 수용국 accredited State
 외교관을 받아들이는 국가.
 참조 항목: 외교관 파견국 (accrediting State)
- 297 외교관 파견국 accrediting State
 참조 항목: 외교관 수용국 (accredited State)
- 298 외교상 기피인물(라틴어) persona non grata (latin)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란 의미의 라틴어로, 외교상 접수국 정부에 의해 거부된 인물을 의미함.

- 299 **외교적 보호**
diplomatic protection "국가는 다른 국가가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 국제법 상 피해자의 국가는 피해를 당한 주체로 해석되어 외교적 조치나 국제사법 절차를 거쳐 피해당사자를 대신하여 보호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1924년 마브로마티스 양허 계약 사건)
참조 항목: 국제공법 (international law(public))
- 300 **외교적 비호**
diplomatic asylum 참조 항목: 비호(외교적) (asylum (diplomatic))
- 301 **외국인**
alien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
참조 항목: 외국인 (foreigner), 비국민 (non-national),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302 **외국인**
foreigner 다른 국가에 속한 혹은 충성을 맹세한 사람.
참조 항목: 비국민 (non-national), 제 3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
- 303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정의는 없음.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 또는 국가적 정체성에 있어서 이방인이거나 외국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제하며, 자주 혈통은 태도, 편견 및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두 개념을 차별화하기는 어려움.
참조 항목: 차별 (discrimination), 인종 (race),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주의 (racism)
- 304 **운송**
transportation 어떤 운송 수단에 의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사람이나 화물이 이동하는 것.
참조 항목: 운송 회사 (carrier), 운송수단 (conveyance)
- 305 **운송 회사**
carrier 운송수단의 소유주 또는 용선주(charterer)를 의미. 대개 항공, 버스 또는 철도 회사, 유람선 운송사를 지칭. 일부 국가들의 법에서는 사람들을 국경으로 나르는 수송 기관의 소유주까지도 포함.
참조 항목: 운송수단 (conveyance), 운송 (transportation)
- 306 **운송 회사 책임에 관한 법**
carrier liability law 이주의 경우, 유효한 출입국 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경까지 수송한 운송 회사에 벌금, 처벌과 같은 일련의 행정적 또는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법.
참조 항목: 국경 관리 (border management), 승객 (passenger), 여행자 (traveller)
- 307 **운송수단**
conveyance 국가 간에 사람을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행기, 배, 열차, 자동차, 또는 다른 차나 선박.
참조 항목: 운송 회사 (carrier), 운송 (transportation)
- 308 **원고**
plaintiff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측을 말함.
참조 항목: 피고 (defendant), 피고 (respondent)
- 309 **월경**
border crossing 국경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지정된 검문소나 그 외의 지점에서 국경을 넘는 물리적 행위.

- 참조 항목: 국경 (border), 국경 통제 (border control), 국경관리자 (border officials), 검문소 (checkpoint)*
- 310 **월경 이주**
cross-border migration 국제국경을 넘는 이동 과정.
- 311 **월권(라틴어)**
ultra vires (latin) 권한이 없는; 법인설립허가서 혹은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 312 **위임난민**
mandate refugee *참조: 난민(위임) (refugee (mandate))*
- 313 **위조문서**
fraudulent document 국가로부터 여행 혹은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 혹은 기관(agency)이 허위적으로 작성했거나 혹은 상당히 실질적인 방식으로 변조한 여행 혹은 신분증명서; 혹은 허위진술, 부정 혹은 강압, 또는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발행했거나 취득한 여행 혹은 신분증명서; 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사용된 여행 혹은 신분증명서 (*2000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3조(c)*) 보다 포괄적인 이주의 맥락에서, 졸업증명서나 자격인정과 연관된 허위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CVs)와 사용자로부터의 추천서와 같은 고용관련 위조문서도 이런 문서에 포함될 수 있음.
참조 항목: 기만/사기 (deception), 신분증명 서류 (identity document),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 314 **유괴**
abduction 강압적 또는 사기적 설득수단에 의해 타인을 유인하는 행위. 아동유괴와 관련해서 이 용어는 양육권자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양육권자의 보호가 미치는 장소로 복귀시키지 않음으로써 양육권을 침해함을 의미.
참조 항목: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 납치 (kidnapping),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315 **유목민**
nomad 고정적인 거주지 없이, 종종 물, 음식, 방목지를 찾아 거처를 옮겨 다니는 개인 혹은 그러한 집단의 일원.
- 316 **유입**
influx 특정 국가에 해당국가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갑작스럽게 도착함.
참조 항목: 집단 이주 (mass/collective migration)
- 317 **유자격 국민**
qualified national 이주의 맥락에서, 출신국이나 권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국외거주자.
참조 항목: 두뇌유출 (brain drain), 디아스포라 (diaspora), 고숙련/ 고급인력 이주자 (highly skilled/qualified migrant), 숙련이주자 (skilled migrant)
- 318 **유치소**
holding centre 비호신청자 또는 비정규 상황의 이주자가 수용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위가 결정되는 동안 머무는 시설. 사실상 이런 시설은 대개 구금센터임. 리셉션 센터로도 알려져 있음.
- 319 **의사 일치**
accord 일반적으로 "의사의 일치". 국제공법에서는 조약 또는 협약과 동의어로 사용.

- 참조 항목: 합의/협정 (agreement), 협약 (convention), 규약 (covenant), 법적 문서 (instrument), 조약 (treaty)
- 320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이 권리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됨: 일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1948 년 세계인권선언 13 조(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어떤 국가도 떠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세계인권선언 13 조(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참조 항목: 출국권 (right to leave), 환국권 (right to return)
- 321 **(국내로의)이민**
immigration
특정 국가에서 해당국가 국민이 아닌 자가 정주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과정
참조 항목: 두뇌유입 (brain gain), (국외로의)이민 (emigration)
- 322 **(국외로의)이민**
emigration
다른 나라에 정착할 목적으로 한 나라를 떠나거나 나가는 행위.
참조 항목: 두뇌유출 (brain drain), (국내로의)이민 (immigration), (국외로의)재이민 (re-emigration), 출국권 (right to leave)
- 323 **이민연락관**
immigration liaison officer
비정규 이주를 막고 방지하며, 비정규이주자를 되돌려 보낼 목적으로 국가가 해외에 주재시키는 이민업무 관련 공무원.
- 324 **(국내로의)이민자**
immigrant
국내로 이민하는 사람.
참조 항목: (국외로의)이민자 (emigrant)
- 325 **(국외로의)이민자**
emigrant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
참조 항목: (국외로의)이민 (emigration), (국내로의)이민자 (immigrant)
- 326 **이민자 구금에 대한 대안**
alternatives to immigration detention
국가가 어떤 형태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토 내 이주자나 비호신청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부여해온 조치들. 이러한 조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지향의 비구금 모델들과 반개방된 센터에의 지정 거주와 같은 보다 제한적인 선택들을 포함함. 대안적 조치들은 구금 청구가 고려되기 이전에 모색되어야 함.
- 327 **이산자녀**
separated children
부모나 법적 혹은 통상적 주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아동. 그러나 다른 친척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부모 외의 다른 친족을 동반한 아동도 여기에 포함됨. 유럽 프로그램의 이산자녀[Separated Children in Europe Programme (SCEP)]에 수록된 2004 년 우수사례 보고서(Statement of Good Practice 2004)에 명시된 이산자녀란 "출신국 이외 지역에 있는 18 세 이하 아동, 혹은 부모나 이전의 법적, 통상적 주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가리킴.
유럽프로그램의 이산자녀(SCEP)가 "미동반"보다는 "이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산자녀가 유럽 도착 시 성인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성인이 아동을 책임질 능력이 있거나 책임지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은

- 아니기 때문임.
참조 항목: 아동 (*child*), 미성년자 (*minor*), 보호자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 328 **이산화탄소 감지기**
 carbon dioxide sensors
 열차 또는 트럭의 뒤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고정 또는 휴대용). 이와 같은 감지기는 사람들이 몰래 국경을 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참조 항목: 감지기 (*sensors*).
- 329 **이재민**
 displaced person
 난민과는 다른 이유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으로 인해 본국이나 살던 지역으로부터 피난한 자. 이재민은 보통 내전이나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강제로 피난한 자.
참조 항목: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환경이재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 국외이재민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강제적 이재이주 (*forced displacement*),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난민 (*refugee*)
- 330 **이재이주**
 displacement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이나 본국으로부터 강제 퇴거됨.
참조 항목: 이재민 (*displaced person*)
- 331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
참조 항목: 순 이주 (*net migration*), 총 이주 (*total migration*), 여행 (*tourism*)
- 332 **이주 거버넌스**
 governance of migration
 이주를 규제하고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 법률 체계, 메커니즘 및 관행을 아우르는 시스템. 대개 "이주 관리"라는 용어와 유사어로 쓰이나, 이주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국경을 넘는 이동을 규제하는 구체적 행위를 가리키기도 함.
참조 항목: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질서 있는 이주 (*orderly migration*)
- 333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월경 이주를 위한 질서 있고 인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 체제 내의 다양한 정부 기능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 특히, 특정 특히 국경 내에서의 외국인 입국과 체류 관리, 그리고 난민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보호 업무를 포함함. 이 용어는 주요한 이주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대응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적 접근방법을 일컫음.
참조 항목: 이주 거버넌스 (*governance of migration*), 질서 있는 이주 (*orderly migration*)
- 334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해당자가 국적이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 온 사람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1)).
참조 항목: 등록 이주노동자 (*documented migrant worker*), 국경 노동자 (*frontier worker*), 순회노동자 (*itinerant worker*),

- 특정사업 노동자 (*project-tied worker*), 선원 (*seafarer*), 계절이주노동자/이주 (*seasonal migrant worker/migration*), 자영 이주 노동자 (*self-employed migrant worker*), 특수고용 노동자 (*specified-employment worker*), 해외시설 근무 노동자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 335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 이주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전세계 이주자의 49%정도가 여성임). 최근 수십 년간 여성이주자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주에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변함. 오늘날 여성들은 가족구성원으로서보다는 좀더 독립적으로 이주하며, 적극적으로 취업에 관여함. 이주에서 여성의 증가는 여성에게 특히 취약한 형태의 이주를 조장하는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와 간병인의 상업화된 이주, 성산업으로의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 조직화된 여성결혼이주 등을 포함함. 이러한 취업 중 일부는 성격상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이주자들이 종종 착취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됨.
- 336 **이주자**
migrant
-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주자에 대한 정의는 없음. '이주'라는 용어는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외부로부터 강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개인이 이주결정을 자유로이 내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됨. 그러므로 이 용어는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 국제연합은 이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이주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그리고 이주 방법이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관계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임.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업가나 관광객과 같이 짧은 기간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주자로 여겨지지 않음. 그러나 보통 이 용어는 단기 이주자,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혹은 농장물의 수확을 위해서 짧은 기간을 여행하는 계절 농장 노동자와 같은 특정인을 포함함.
참조 항목: 등록이주자 (*documented migrant*), 이주 (*migration*), 여행자 (*traveller*)
- 337 **이주자 규모(저량)**
migrant stock
- 특정 시점에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의 총 인원.
- 338 **이주자 흐름(유량)**
migrant flow
-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다른 한 국가로 이동 중이거나 이동이 허가된 이주자 수.
- 339 **이주촉진**
facilitated migration
- 여행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해서 정규 이주를 조장하거나 장려함. 이주촉진은 간소화된 사증신청과정, 효율적이고 인력 배치가 잘된 승객검색과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음.
- 340 **이중/복수 국적**
dual/multiple nationality
- 같은 사람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소유함.
참조 항목: 국적 (*nationality*)
- 341 **이차이주**
secondary migration
- 수용국 내 혹은 제 3 국으로의 이주민의 이동. 본래 거주하던 곳을 떠나 이동하는 것을 말함.

- 342 **인간 안보**
human security
개인의 육체적 안전과 경제-사회적 안녕, 존엄성, 인권의 보호를 증진하는 개인의 안보와 관련된 개념. 유엔 회원국은 2005 년 정상회담에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함: "우리는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와 가난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개인,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참조 항목: 역량강화 (empowerment), 보호 (protection)
- 343 **인구강제이주**
population displacement
참조: 이재이주 (displacement)
- 344 **인구학**
demography
인구의 크기, 밀도, 분포 및 생명통계를 통해 인구를 연구하는 학문.
- 345 **인권**
human rights
현대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자유와 혜택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에서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함. 이런 권리는 1948 년 세계인권선언, 1966 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핵심을 바탕으로 다른 협약으로 발전됨(예: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참조 항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절대불가침인권 (non-derogable human rights), 소수자 보호 (protection of minorities), 주권 (sovereignty)
- 346 **인도, 송환**
extradition
재판과 처벌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 밖과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 내에서 일어난 범죄로 고발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도. 인도과정은 통상적으로 국가법령, 양자조약, 어떤 경우에는 다자간 협약 등에 근거함. (예: 1957 년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참조 항목: 강제송환 (refoulement)
- 347 **인도법(국제)**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전시나 무력충돌 시 개인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국제법규정.
- 348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1998 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7 조에 의하면, 인도에 반한 죄는 "공격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어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에 가담한 범죄"임. 이 정의에 포함되는 범죄는 살인; 몰살; 노예화; 특정인구의 강제퇴거 및 강제이송;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또는 구문; 고문; 강간; 성적 노예; 강요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 정치, 인종, 국적, 종족, 문화, 종교, 젠더(7 조 3 항 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또는 이 항에서 명시한 어떠한 행위나 사법권 내에서 규정된 범죄와 연관되어 국제법 상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보편적으로

- 인정한 기타의 근거로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 가하는 박해; 강제 실종; 인종차별 범죄; 의도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유발하는 기타 반인도적 행위.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집단 살해 (*genocide*), 테러리즘 (*terrorism*),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전쟁 범죄 (*war crimes*)
- 349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의 사정을 다루는 원조. 이는 주로 해당 국가의 책임이나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NGOs), 적십자·적신월 운동에 의해 지원받기도 함. 이 지원은 인도주의적 원칙, 특히 인류애의 원칙(인류의 고통은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아동과 여성, 노인들과 같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희생자의 권리와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교전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치, 종교, 이념적 성격의 논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형평성의 원칙(인도적 지원은 민족, 젠더, 국적,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종교에 근거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통의 해소는 반드시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권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고통에게 주어져야 한다)에 의거하여 제공됨.
참조 항목: 인도법(국제)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인도주의 원칙 (*humanitarian principles*)
- 350 **인도주의 원칙**
humanitarian principles
- 모든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 국제인권과 국제 인도법을 그 기초로 하며 인도주의적 행위의 온전한 보호를 추구함. 인도주의적 원칙의 첫 번째 명시적 표현은 “1965년 국제 적십자·적신월 기본원칙”에서 찾을 수 있음.
참조 항목: 인권 (*human rights*),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법(국제)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비차별 (*non-discrimination*)
- 351 **인신 보호 영장**
habeas corpus
- 법정에서 구금 또는 금고의 합법성을 가리는 조치로 체포나 수용의 합법성을 가리는 데에도 사용됨. 영장은 (범죄인) 인도 과정, 보석 석방의 권리 또는 보석금, 징역을 선고하는 법정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쓰이기도 함.
- 352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가나 이익의 제공 혹은 수락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수하는 것.” (2000년 UN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 의정서, 3 조(a)) 인신매매는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초국경적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음.
참조 항목: 유괴 (*abduction*), assets forfeiture (자산 몰수), 이산화탄소 감지기 (*carbon dioxide sensors*), 강제 (*coercion*), 기만/사기 (*deception*), 착취 (*exploitation*), 사기 (*fraud*),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s*), 감지기 (*sensors*), 밀입국 (*smuggling*),

- 인신매매자 (trafficker, human),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 of human trafficking),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353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 of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를 당한 모든 자연인.
참조 항목: 인신매매자 (trafficker, human),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354 **인신매매자**
human trafficker
참조: 인신매매자 (trafficker, human)
- 355 **인신매매자**
trafficker, human
착취를 위한 기만, 정신적 혹은 육체적 강제를 통해,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이익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사람의 이동에 관여하는 중개자. 인신매매자의 본래 의도는 사람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러한 착취로부터 이익이나 이점을 얻기 위한 것임.
참조 항목: 착취 (exploitation), 밀입국 알선자 (smuggler (of people)),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 of human trafficking)
- 356 **인적 관할권**
personal jurisdiction
법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물권(物權)만이 아니라 피고의 권리에까지 적용되는 사법권.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지위를 관할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법적 능력을 말하기도 함.
참조 항목: 사법권, 관할권 (jurisdiction), 국적 (nationality), 주권 (sovereignty)
- 357 **인종**
race
1951 년 난민 협약 하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종은 일반적으로 '인종'으로 불리는 모든 종류의 민족 집단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됨.
참조 항목: 인종주의 (racism), 난민 (refugee),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 358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1965 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 조(1)).
참조 항목: 차별 (discrimination), 인종주의 (racism),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 359 **인종주의**
racism
특정 인종과 민족집단이 신체적, 문화적 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와 통제에 의해 다른 인종이나 민족집단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여기는 이데올로기적 개념. 인종주의는 인종적 우수성에 대한 주의 또는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음. 이러한 신념에는 인종이 지적 능력, 문화적 특성과 도덕적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포함함.
참조 항목: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 360 **인터뷰**
interview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 사람의 개인적 자질을 밝혀낼 목적으로 해당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인터뷰는 난민이나 다른 체류자격 신청에 대한

- 심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절차.
참조 항목: 심사관 (*adjudicator*), 신청 (*application*), 일차심사 (*primary inspection*), 추가심사 (*secondary inspection*)
- 361 **일차심사**
 primary inspection
 국제적 관행으로 일차심사관 출입국 심사대에서 행해지는 입국 신청자에 대한 조사로서 일차심사와 추가심사로 나뉨. 대부분의 입국 신청자는 입국허가 전에 일차심사대에서 약식의 선별과정만을 거치게 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의심되는 입국 신청자 또는 국가 감시 제도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추가심사를 실시하며, 해당 신청자는 인터뷰 또는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됨. 두 단계로 나뉘어진 조사는 좀 더 효율적이며 대다수의 합법적 여행자들의 심사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참조 항목: 입국허가 (*admission*), 검문소 (*checkpoint*), 인터뷰 (*interview*), 감시 제도 (*lookout system*), 추가심사 (*secondary inspection*)
- 362 **임시 여행 증명서류**
 temporary travel documents
 대부분 여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출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발행하는 서류. 주로 그러한 서류는 단기 사용을 위해 발행되며, 서류 소지자가 출신국으로 입국하면 만료됨.
참조 항목: 신분증 (*certificate of identity*), 여행증명서 (*UN 에서 발행한*) (*laissez-passer*), 여권 (*passport*), 여행 증명서류 (*travel documents*), 여행서류(*난민협약 의거*)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사증 (*visa*)
- 363 **임시(노동)이주**
 temporary (labour) migration
 출신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명시된 한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주.
- 364 **임시보호**
 temporary protection
 충돌상황 혹은 일반적인 폭력에 의해 대규모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대해 개별 지위 결정과 상관없이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간에 개발된 협정.
- 365 **임시숙소(난민, 이주자를 위한)**
 accommodation centre
참조: 유치소 (*holding centre*)
- 366 **임시이주노동자**
 temporary migrant workers
 개인과의 노동계약 혹은 기업과의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국에서 일하는 숙련노동자, 반숙련노동자, 단순노무자를 말함. 또한 계약이주노동자라고도 불림.
참조 항목: 계절이주노동자/이주 (*seasonal migrant worker/migration*), 단기 이주자 (*short-term migrant*)
- 367 **입국**
 entry
 비국민이 다른 나라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것.
참조 항목: 입국허가 (*admission*), 입국불허 (*non-admission*)
- 368 **입국 지점**
 point of entry
참조: 검문소 (*checkpoint*)
- 369 **입국거부**
 exclusion
 비국민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함.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관리자 혹은 다른 기관이 비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판사의 심리 후에 입국거부를 명령함.

- 370 **입국금지**
entry ban
특정 기간 동안 자국의 영토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적 혹은 사법적 결정.
- 371 **입국불허**
non-admission
자국 영토로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참조 항목: 입국허가 (admission), 입국 (entry)
- 372 **입국불허사유**
grounds of inadmissibility
이주법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국민의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정의.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요소는 적격하더라도 사증 또는 기타 체류자격이 거부됨. 입국불허사유는 일반적으로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비국민, 예를 들어 유효한 여행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자, 형사 전과가 있는 자, 공중 보건 및 공공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과거 추방된 적이 있는 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참조 항목: 거부된 신청자 (rejected applicant), 면제 (waiver)
- 373 **입국심사인**
entry stamp
어떤 나라를 들어갈 때 국경관리관이 여행 증명서류에 찍어주는 도장으로,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짜와 장소를 명시함.
참조 항목: 출국심사인 (exit stamp)
- 374 **입국이민 쿼터**
immigration quota
일반적으로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입국에 대해 수용국가가 책정한 수적인 제한.
- 375 **입국허가**
admission
입국허가. 비국민은 검문소 (항공, 육상 또는 해상)를 통과하여 국경관리자의 입국허락을 받으면 "입국허가"를 받은 것임. 몰래 입국한 비국민은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참조 항목: 국경관리자 (border officials), 검문소 (checkpoint), 입국 (entry), 입국불허 (non-admission)
- 376 **입양, 채택**
adoption
자녀와 친부모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종료시키고, 자녀와 양부모간에 이와 유사한 권리, 의무로 대체시키는 법률적인 절차. 국제공법에서 이 용어는 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확정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의미함. 조약은 투표, 가조인, 서명 등에 의해 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의지를 표명하는 특정행위를 통하여 채택됨. 채택은 또한 조약의 수정 형식이나 내용, 또는 조약에 근거한 규정을 정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조 항목: 아동 입양(국제) (child adoption (international))
- 377 **입증 기준**
standard of proof
특정사건이 요구하는 증거의 설득력 정도나 수준. 예를 들어 난민상황에서 박해의 두려움을 측정할 때 입증 기준은 "합리적 근거(well-founded)"임.
- 378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당사자가 논의 중인 주장 또는 혐의를 증명해야 할 의무. 이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비국민에게 부과되는 입증 책임. 다시 말해 비국민은 자신이 입국할 자격이 있고 해당국의 법에 의해 용인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난민 지위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상황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본인이 명백히 박해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참조 항목: 선의의 신청자 (bona fide applicant)

ㅈ

- 379 **자력 귀환**
spontaneous return
난민, 국내이재민(IDP), 비호신청자 등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출신국으로의 귀환. 자력 귀환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국제적 혹은 국가적 지원 없이 이뤄짐.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자력 이주 (spontaneous migr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380 **자력 이주**
spontaneous migration
외부의 지원 없이 이주계획에 착수하고 진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이주. 자력 이주는 보통 흡입-배출요인(push-pull factors)이 원인이고,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형태의 국제적 혹은 국가적 지원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
참조 항목: 지원받은 이주 (assisted migration),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배출-흡입 요인 (push-pull factors), 자력 귀환 (spontaneous return)
- 381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자유의지에 근거해 귀환자가 지원받아 혹은 독립적으로 출신국, 경유국, 혹은 제 3 국으로 가는 것.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강제귀환 (forced return),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귀환 (return),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자력 귀환 (spontaneous retur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 382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유롭게 표현된 돌아가겠다는 의사에 기초하여 해당자가 출신국으로 송환함. 보통 난민, 전쟁포로, 민간 억류자의 맥락에서 사용됨. 또한 난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영구적 해결책 중 하나임.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영구적 해결책 (durable solution), 통합 (integration), 비자발적 송환 (involuntary repatriation),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재정착 (resettlement), 귀환 (return), 환국권 (right to return)
- 383 **자산 몰수**
assets forfeiture
밀입국 또는 인신매매 등에 사용된 차량을 몰수하는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자산을 국가가 압수하는 것.
참조 항목: 밀입국 (smuggling),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384 **자영 이주 노동자**
self-employed migrant worker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활동에 종사하며, 통상 혼자 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꾸리는 이주노동자 및 취업국의 법률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자영취업을 인정받은 여타의 이주노동자"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h)).
참조 항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385 **자유재량권**
discretion
특정 상황에서, 종종 공공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이나 권리.

- 386 **자의적인**
arbitrary
불공정, 예측불가능, 불합리함과 변덕스러움과 관련된 개념으로, 불합리한 방식으로.
- 387 **장기 이주자**
long-term migrant
상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적어도 일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으로 목적국이 실질적인 상주국이 됨.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국외로의 장기 이민자가 되고 목적국의 입장에서는 국내로의 장기 이민자가 됨.
참조 항목: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단기 이주자 (short-term migrant)
- 388 **(국외로의)재이민**
re-emigration
출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다시 이민을 가는 것.
참조 항목: (국외로의)이민 (emigration), 귀환 (return)
- 389 **재입국허가**
readmission
국적을 소유한 자, 제 3 국의 국적 소유자 또는 무국적자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의 법률조항.
참조 항목: 재입국허가협정 (readmission agreement)
- 390 **재입국허가협정**
readmission agreement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으로 국가가 비정규적 상황에 처한 비국적자를 출신국이나 경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의 수립을 다룸.
참조 항목: 합의/협정 (agreement), 쌍무적인/양자간 (bilateral), 귀환 (return)
- 391 **재정보증**
sponsorship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국가에 입국하여 거주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지원, 특히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행위.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범주의 이민 및 방문자격 요건으로 재정보증 혹은 적정소득증명서를 요구함.
참조 항목: 부양서약서 (affidavit of support), 보증금 (bond), 보증 (guarantee)
- 392 **재정착**
resettlement
난민, 국내이재민 등을 대개 제 3 국민 다른 지리적 영토나 환경으로 재배치하고 통합시키는 것.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출신국으로부터 도피가 필요한 난민들을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국가로 이송하는 것. 난민들은 보통 비호를 허가 받거나 기타 형태의 장기 거주권을 부여 받게 됨. 많은 경우 난민들은 귀화의 기회를 가짐.
참조 항목: 영구적 해결책 (durable solution), 강제 재정착 (forced resettlement/relocation), 통합 (integration), 영구 정착자 (permanent settlers), 난민(위임) (refugee (mandate)),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 393 **재통합**
reintegration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이나 과정에 재포용되거나(re-inclusion), 재통합되는(re-incorporation) 것. 예를 들어, 이주자가 출신국 혹은 상주국으로 귀환하여 그 사회에 재포용되거나 재통합되는 것.
참조 항목: 동화 (assimilation), 통합 (integration), 재통합(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재통합(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재통합(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 394 **재통합(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귀환 이주의 맥락에서, 귀환 이주자가 출신국의 경제 체계로 재편입(reinsertion)되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과정. 개발 용어로서 경제적 재통합은 출신국의 경제, 사회적 개발을 위해서 귀환 이주자가 외국에서 습득한

-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함.
참조 항목: 두뇌유입 (*brain gain*), 통합 (*integration*), 재통합 (*reintegration*), 귀환 (*return*),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
- 395 **재통합(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귀환 이주의 맥락에서, 귀환 이주자가 출신국 사회의 가치, 생활방식, 언어, 도덕적 준거, 이념, 전통 등을 재채택(re-adoption)하는 것.
참조 항목: 통합 (*integration*), 재통합 (*reintegration*), 귀환 (*return*),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
- 396 **재통합(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귀환 이주의 맥락에서, 귀환 이주자가 출신국의 사회구조 안으로 재편입(reinsertion)되는 것. 사회적 재통합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개발(친구, 친척, 이웃)과 시민사회 구조의 발전(결사체, 자조그룹, 기타 조직)을 포함함.
참조 항목: 통합 (*integration*), 재통합 (*reintegration*), 귀환 (*return*),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
- 397 **저량(외국인)**
 stock (foreign) 특정날짜(예: 1 월 1 일 혹은 12 월 31 일)에 특정지역에 머무는 외국인의 수.
참조 항목: 이주자 흐름(유량) (*migrant flow*)
- 398 **저숙련 그리고 반숙련 이주 노동자**
 less/low skilled and semi-skilled migrant worker 저숙련과 반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국제적으로 동의된 정의가 없음. 넓은 관점에서, 반숙련 노동자는 최대의/최상의 능률로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직업에 익숙해지거나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짐. 비록 이러한 교육이 몇 년이 아니라 몇 주나 몇 일 동안 이뤄지고, 숙련 노동자로 여겨지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간이나 강도가 아니며 고등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소위 "육체노동자"(예를 들어, 생산, 건설노동자)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반숙련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는 반숙련 노동자보다 더 적게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 직업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서 능숙해진 사람으로 여겨짐.
참조 항목: 숙련이주자 (*skilled migrant*)
- 399 **적법절차**
 due process 개인의 권리 보호와 집행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인 규칙과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로, 사전통지, 법정이나 사건을 결정할 권력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참조 항목: 공정한 재판 (*fair trial*)
- 400 **적법한**
 legitimate 진실되고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합법적인 것. 예를 들면, 합법적인 이주자가 이민법에 따르는 적법한 의도를 가지고 적법한 여행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입국한 경우.
참조 항목: bona fide (선의의), 선의 (*good faith*)
- 401 **전쟁 범죄**
 war crimes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의 위반. 이러한 범죄는 의도적인 살인, 고문, 비인도적 처우, 더 이상 교전상태가 아닌 사람의 불법적 구금이나 추방 및 자산의 파괴나 전용 등 1949 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규약 위반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시민 혹은 군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평화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peace), *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 402 **전지구화/세계화**
globalization

인간, 기업, 각기 다른 국가의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통합의 과정으로서,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의해 추진되고 정보 기술이 이를 용이하게 함. 이 과정은 환경, 문화, 정치 체제, 경제 발전 및 번영, 인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침.
- 403 **절대 불가침인권**
non-derogable human rights

항상 반드시 인정되고 존중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인권.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다음의 권리들을 절대불가침인권으로 규정함: 생명권, 고문,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계약상 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형법의 불소급 원칙,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절대 불가침 인권의 목록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 커뮤니티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보편적이며, 분리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며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참조 항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권리유예 (derogation), 기본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인권 (human rights), 양도불가의 (inalienable)
- 404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연안국의 영해와 인접한 해양 지역. 그 접속수역에서는 한 국가가 (a) 영토 및 영해 내에서의 관습, 재정 · 이민 · 위생법 또는 규정의 위반을 방지하고 (b) 영토 및 영해 내에서 발생한 위의 법과 규정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 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 (*1982 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33 조*).
참조 항목: 공해 (high seas), 영해 (territorial sea)
- 405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승인되거나 공인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주.
참조 항목: 비밀 이주 (clandestine migration),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질서 있는 이주 (orderly migration),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406 **정규화**
regularization

한 국가의 관계 당국이 비정규적 혹은 미등록 상황에 있는 비국민들에게 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모든 절차 또는 프로그램. 전형적인 정규화 방법으로는 유입국에서 비정규적 상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였고 기타 자격상 문제가 없는 비국민에게 내리는 사면 조치("합법화"라고도 함)가 있음.
참조 항목: 사면 (amnesty), 합법화 (legalization)
- 407 **정보 대상**
data subjects

하나의 또는 여러 특징적 인자들을 참조하여 직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개인. 이러한 인자는 이름, 신분번호, 물리적 상황, 신체적·정신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특징들을 포함함.
참조 항목: 정보 보호 (data protection), 개인 정보 (personal data)
- 408 **정보 보호**
data protection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및 공개와 관련하여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기술적, 물리적 보호장치의 체계적인 적용.
참조 항목: 정보 대상 (data subjects), 개인 정보 (personal data).

- 409 **정착 이주자**
migrants for settlement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혹은 장기체류가 허가되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 외국인 (예: 고용기반 이주자(employment-based migrants), 가족 이주자(family-based migrants), 연고이주자(ancestry-based migrants),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권리를 가진 이주자 혹은 외국인 은퇴자 (migrants with the right to free establishment, or foreign retirees)).
- 410 **정책**
policy
공공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일반적 원칙들.
참조 항목: 이주 거버넌스 (governance of migration),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 411 **정치적 의견**
political opinion
1951 년 난민협약 상 박해의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의견은 어떤 사람이 의견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당국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아직 표현되지 않았지만 표현될 것이라는 가정과, 그것이 표출될 때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박해의 근거가 됨.
참조 항목: 난민 (refugee)
- 412 **제 3 국**
third country
출신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참조 항목: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수용국 (receiving country), 출신국 (State of origin), 경유국 (State of transit)
- 413 **제 3 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
참조: 외국인 (foreigner), 국민 (national), 비국민 (non-national)
- 414 **젠더**
gender
어떤 맥락에서든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역할, 책임, 제약, 기회, 특권을 칭함. 이런 특징은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문화 내 또는 문화간 다양하게 나타남. 젠더는 관계적 개념으로, 단순히 여자 또는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를 일컫음.
- 415 **젠더 폭력**
gender based violence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강제 또는 자의적 자유 박탈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해당인의 젠더를 이유로 개인에게 육체적, 성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1993 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1 조).
참조 항목: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 416 **조약**
treaty
"단일문서 혹은 복수의 문서에 구현되었는가와 상관없이, 또한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국가 간 서면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국제적 합의"(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조(1)(a)).
참조 항목: 가입 (accession), 의사 일치 (accord), 합의/협정 (agreement), 쌍무적인/양자간 (bilateral), 노동이주 쌍무/양자 협정 (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s), 협약 (convention), 규약 (covenant), 법적 문서 (instrument), 다자간 (multilateral), 비준 (ratification),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to a treaty)
- 417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to a treaty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표현, 명칭 여하를

-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조(1)(d)).
 참조 항목: 비준 (*ratification*), 조약 (*treaty*)
- 418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견고히 혹은 느슨하게 조직된 결사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 행위로, 대개 사회를 대가로 불법적인 시장의 창출, 공급 및 착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규모의 복잡한 범죄 행위를 지칭함. 이와 같은 행위들은 대개 법을 철저히 무시한 가운데 이뤄지며, 중증 위협, 협박, 신체에 가하는 폭력 등 사람에게 대한 공격을 수반함.
 참조 항목: 밀입국 (*smuggling*),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419 **종교**
 religion
 1951년 난민 협약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함: 종교 단체의 회원가입 금지, 사생활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가르침 금지, 혹은 어떤 개인이 종교 생활을 하거나 또는 특정 종교 단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심각하게 차별적인 조치.
- 420 **주권**
 sovereignty
 이주의 맥락에서 주권이란 어떤 비국적자를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절대적 권리를 의미함. 이 영토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인권, 양자협정 혹은 역내협정(예: 자유이동이나 통합에 관련된 협정)조항에 따라 제약을 받음.
 참조 항목: 국경 관리 (*border management*), 인권 (*human rights*), 사법권, 관할권 (*jurisdiction*),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인적 관할권 (*personal jurisdiction*), 국가 (*State*), 영토관할권 (*territorial jurisdiction*),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 421 **주신청자**
 principal/primary/main applicant
 이주의 맥락에서, 난민 또는 기타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을 의미함. 일반적인 국제적 관행은 피부양자(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수반신청자로 고려되며 주신청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 받음.
 참조 항목: 수반신청자 (*derivative applicant*), 이주자 (*migrant*), 난민 (*refugee*)
- 422 **준사법적**
 quasi-judicial
 정부의 집행부 또는 행정부의 관리가 갖는 법률 조항과 관련이 있거나 관여된 것. 이러한 조치는 종종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행정 기관에 의해 수행됨. 준사법적 법률 조치는 종종 국민의 기본권을 결정하며, 자유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선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 의해 타당성이 검토됨.
- 423 **중립**
 neutrality
 국가가 무력충돌 시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
 참조 항목: 무력충돌 (*armed conflict*)
- 424 **중립지대**
 neutralized zones
 국제 무력충돌의 맥락에서, 분쟁 지역 인근에서 군사 활동 중 부상을 입었거나 병에 걸린 전투원과 비전투원,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민간인들을

- 보호할 목적으로 실제 전투지 안에 정해놓은 구역들.
참조 항목: 도피처 (*safe haven*),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
- 425 **중지 조항**
cessation clauses 1951 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1 조(c), 1969 년 아프리카통일기구 난민협약 1 조(4)와 같이 더 이상의 필요가 사라져 난민의 지위가 종결되는 조건들을 제시한 문서 속 법적 조항.
참조 항목: 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 426 **증인**
witness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법적인 맥락에서, 법원에서 이러한 지식을 증언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 어떤 사건과 행위를 목격함. 법적인 맥락에서, 합의나 계약과 같은 법률 문서의 이행을 목격함.
참조 항목: 선서 (*oath*)
- 427 **지역협의절차**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 모여, 협력적 방식으로 이주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구속력 없는 협의 포럼. 어떤 지역협의절차는 비정부 기구 혹은 시민사회의 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함.
참조 항목: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 428 **지원받은 이주**
assisted migration 자발적으로, 지원이 없이 이루어진 이주와는 달리 정부, 정부들 또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주자의 이동.
참조 항목: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자력 이주 (*spontaneous migration*), 자력 귀환 (*spontaneous return*)
- 429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assisted voluntary return 비호신청이 기각된 자, 인신매매 피해자, 타국에서 발이 묶인 외국인, 수용국에 체류할 수 없거나 체류를 원하지 않는 유자격 국민이나 기타 이주자에게 행정적, 물질적, 재정적 또는 재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
참조 항목: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귀환 (*return*), 자력 이주 (*spontaneous migration*), 자력 귀환 (*spontaneous retur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 430 **진실되고 안정적인 결혼**
genuine and stable marriage 영사관 또는 이민국 공무원이, 장기간의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도가 있어 진실되며, 오래 유지될 듯하여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결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결혼이 장기간의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지니고 시작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결혼은 진실된 것으로 간주함.
- 431 **질서 있는 이주**
orderly migration 사람이 상주지를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출신국을 떠나 목적국 혹은 유입국으로의 여행, 이동, 입국의 과정을 통치하는 하는 법과 규제를 지킴.
참조 항목: 이주 거버넌스 (*governance of migration*),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 432 **집단 살해**
genocide 어떤 민족, 인종, 종교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 특정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는 일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일, 그들의 삶의 조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여 그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말살하는 일, 그 집단 내 출산을 고의로 방해/금지하는 조치를 가하는 일, 해당 집단의 아동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일(1948 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 조).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433 **집단 이주**
mass/collective migration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

참조 항목: 개별이주 (*individual migration*), 유입 (*influx*)

434 **집단이동**
exodus

(단발적 혹은 산발적으로) 출신국을 떠나는 집단이동. 대량 집단이동은 특정 기간에 대규모 이동 혹은 특정 공동체의 일부가 이동하는 것.

435 **집단추방**
expulsion *en masse*

집단추방으로도 불림. 대규모 집단추방. 비국민의 집단추방은 몇몇 국제법 규약에 의해 금지 (*1950 년 유럽인권협약 제 4 의정서 4 조; 1981 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12-5 조; 1969 년 미주인권협약 22-9 조*).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집단추방은 비국민들이 집단으로 한 나라를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임. 단, 특정 집단의 각 개별 비국민의 특별한 사례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예외로 함 (*1999 년 2 월 23 일 안드리치 대 스웨덴 사건 (Andric v. Sweden), 2002 년 2 월 5 일 콘카 대 벨기에 사건 (Čonka v. Belgium) 문단 59*). 집단추방은 또한 한 종족집단의 구성원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로부터 내보내질 때 일어날 수 있음.

참조 항목: 집단추방 (*expulsion*), 추방명령 (*expulsion order*)

大

- 436 **차단**
interception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길을 개척하거나 육로, 해로 및 항로를 통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수단.
참조 항목: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 437 **차별**
discrimination
선호하는 사람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 "인종, 성별, 언어 및 종교"(1945년 유엔헌장 1조(3)) 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민족/사회적 출신배경, 재산, 태생, 기타 다른 지위"(1948년 세계인권선언 2조)로 인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음.
참조 항목: 비차별 (*non-discrimination*), 박해 (*persecution*),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주의 (*racism*),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 438 **착취**
exploitation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성 착취, 강제노동 혹은 복무, 노예 혹은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혹은 장기 제거).
참조 항목: 예속된 노동 (*bonded labour*),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강제노동 (*forced/compulsory labour*), 노예상태 (*servitude*), 노예제 (*slavery*), 인신매매자 (*trafficker, human*),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439 **채무에 따른 예속**
debt bondage
적절히 평가된 채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채무의 청산에 적용되지 않거나, 서비스의 기간과 성격이 한정되고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채무를 이유로 개인적 서비스 제공이나 채무자의 통제를 담보로 하는 상황. (노예제 폐지를 위한 유엔 보충협약 1조(a), 1956년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관습의 폐지를 위한 협약).
참조 항목: 착취 (*exploitation*), 노예제 (*slavery*),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440 **청구**
claim
정부 기관 또는 법원을 대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실행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난민 지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민사 소송 시 법적 보상 등이 예.
참조 항목: 신청 (*application*)
- 441 **청원**
petition
참조: 재정보증 (*sponsorship*)
- 442 **체류기간도과(초과)**
overstay
입국이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한 국가에 머무르는 것. 다음과 같이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함. "미등록 이주자들은 체류기간도과자들과 비정규적으로 입국한 자들로 고르게 양분된다."
참조 항목: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

- 443 **체류자격**
immigration status
현지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이주자에게 부여된 신분.
참조 항목: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 444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법적으로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비국민이 다른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절차. 예를 들어, 학생 사증을 보유한 비시민권자가 학업을 마쳤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본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기존의 학생 사증은 취업 사증으로 대체.
참조 항목: 체류자격 (immigration status), 비국민 (non-national), 사증 (visa)
- 445 **체류자격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참조: 체류자격 변경 (change of status)
- 446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
사람들이 지형학적인 국경을 넘어 사회문화적 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과정.
- 447 **초청 노동자**
guest worker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체류와 고용을 위해 모집된 경제적 이주자를 일컫음. 이 용어는 보통 1950~60년대 이루어진 이주 흐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참조 항목: 경제적 이주자 (economic migrant),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448 **총 이주**
total migration
국내로의 이민자들의 입국 혹은 도착 수, 국외로의 이민자들의 출국 혹은 출발 수의 합계를 통해 이주의 총량이 산출되며, 이를 출·입국의 차이로부터 계산되는 순 이주(net migration) 혹은 이주 대차(migration balance)와는 구분하여 총 이주(total migration)로 칭함.
참조 항목: 순 이주 (net migration)
- 449 **최근친자**
next of kin
한 개인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사람들.
- 450 **최소 기준**
minimum standard
참조: 국제 최소기준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 451 **최초 비호국**
first country of asylum
출신국 밖에 있는 난민 또는 이재민이 보호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국가. 최초 비호국의 개념은 종종 난민결정절차(the asylum determination procedure)에 대한 접근의 한 조건으로서 사용됨.
참조 항목: 비호(영토내의) (asylum (territorial)), 더블린 제 2 규약 (Dublin II Regulation), 난민 (refugee), 비호권 (right of asylum), 안전한 제 3국 (safe third country)
- 452 **추가심사**
secondary inspection
입국절차 중 일차심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신청자가 감시 제도에 감지될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나 추가심사를 받게 됨.
참조 항목: 인터뷰 (interview), 감시 제도 (lookout system), 일차심사 (primary inspection)
- 453 **추방**
expulsion
특정 국가 당국이 어떤 개인 혹은 개인들(비국민 혹은 무국적자들)을 그들의 의지와 달리 그 국가의 영토로부터 퇴거시키려는 의도로 혹은 퇴거시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취하는 행위.

-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en masse*), 추방명령 (*expulsion order*), 강제송환 (*refoulement*), 퇴거 (*removal*)
- 454 **추방명령**
expulsion order
한 국가가 비국적자에게 자국 영토를 떠날 것을 강제하는 명령.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집단추방 (*expulsion en masse*), 강제송환 (*refoulement*)
- 455 **출국 지점**
point of exit
참조: 검문소 (*checkpoint*)
- 456 **출국권**
right to leave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를 갖는다." (1948 년 세계인권선언 13 조(2)) 떠날 권리는 다른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조(2)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명시함. 떠날 권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의 한 측면이며,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그러나 그에 수반하여 어떤 나라의 영토에 들어갈 권리는 국제법 상 존재하지 않음.
참조 항목: (국외로의)이민 (*emigration*),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인권 (*human rights*), 국제 최소기준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귀환 (*return*)
- 457 **출국사증**
exit visa
사증 유효기간이 완료되어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사증. 일부 국가에서는 "연결사증(bridging visa)"라고도 함.
참조 항목: 사증 (*visa*)
- 458 **출국심사인**
exit stamp
어떤 나라를 떠날 때 출입국조사관이 여행 증명서류에 찍어주는 도장으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는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있음.
참조 항목: 입국심사인 (*entry stamp*)
- 459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정부기관이나 종교단체가 발급하며 특히 개인의 출생시간과 출생지 등을 기재한 원본 증명서.
참조 항목: 신분증명 서류 (*identity document*)
- 460 **출신국**
country of origin
(합법 또는 불법)이주의 흐름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국가.
참조 항목: 안전한 출신국 (*safe country of origin*), 송출국 (*sending country*), 출신국/송출국 (*source country*), 출신국 (*State of origin*), 제 3 국 (*third country*)
- 461 **출신국**
State of origin
"해당자의 국적국"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조(a)).
참조 항목: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송출국 (*sending country*), 제 3 국 (*third country*)
- 462 **출신국/송출국**
source country
참조: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송출국 (*sending country*)
- 463 **출입국 카드**
arrival/departure card
목적국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시에 개인이 작성하여 (여권, 그리고 요구 받는 경우 사증과 함께) 입국심사관에게

- 제출하는 카드. 몇몇 국가에서는 국경관리자가 입국 시 카드를 수거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카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여행자에게 돌려주고 그 나라에서 출국할 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카드에 대한 국제 표준은 국제항공기구의 1944 년 민간항공에 대한 국제협약 부속서 9 편에 정해져 있음.
 참조 항목: 검문소 (*checkpoint*), 신분증명 서류 (*identity documents*), 여권 (*passport*), 사증 (*visa*)
- 464 **출입국관리구역**
 Immigration zone
 한 국가의 이민법이 적용되는 공해와 영토의 영역(migration zone 라고도 함).
 참조 항목: 공해 (*high seas*), 차단 (*interception*)
- 465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
 국가 내 다른 집단들보다 차별적 관행, 폭력, 자연이나 환경 재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혹은 사회적 영역; 충돌이나 위기 시에 보다 큰 위험에 처하는 집단 혹은 사회적 영역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토착민, 이주자 등).
 참조 항목: 소수자 (*minority*), 소수자 보호 (*protection of minorities*)
- 466 **취업국**
 State of employment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국가 중 해당하는 경우"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조(b)).
 참조 항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수용국 (*receiving country*)

국

- 467 **쿼터**
quota
이주와 비호 맥락에서의 수의 제한. 많은 국가들이 한 해에 입국을 허용하는 이주자들의 수를 한정하고 있음.
참조 항목: 이주 관리 (migration management)
- 468 **테러리즘**
terrorism
“테러리즘”에 대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정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취하는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테러리즘은 국가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 역량 내에서 취하는 개인 혹은 단체 행위일 수 있음.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한 국가의 행위 (강제노동, 강제퇴거, 집단살해 등의 인권침해) 혹은 적국의 시민들에 대한 국제적 무력 충돌 중에 일어나는 행위일 수도 있음. 1999 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부기된 국제 조약에는 테러리스트 행위의 특정 범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이 협약은 테러리즘을 “그 본질과 맥락에 있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정부 혹은 국제 기구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시행하거나 포기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 혹은 무력충돌 시 적극적으로 적대행위를 취하지 않은 일반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로 정함. (제 2 조(1)(b)).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E

- 469 **통합**
integration
- "통합"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주자가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수용국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자와 수용국 양방의 적응과정을 의미함. 통합은 반드시 영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용국에서 이민자와 이민수용사회의 권리와 의무, 여러 종류의 서비스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이민자와 이민수용사회를 공통의 목적으로 결합시키는 핵심 가치 존중과 정체성에 대한 고려를 함의함. 지역통합은 난민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영구적 해결책 중 하나임. 이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나 보호자 미동반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참조 항목: 문화변용 (acculturation), 동화 (assimilation), 문화 교육 (cultural orientation), 문화 (culture), 영구적 해결책 (durable solution), 포용 (inclusion), 재통합 (reintegration), 재통합(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재통합(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재통합(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재정착 (resettlement),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 470 **퇴거**
removal
- 돌려보낼 의무 이행; 국가 밖으로의 물리적 이송.
참조 항목: 강제퇴거 (deportation), 집단추방 (expulsion), 강제송환 (refoulement)
- 471 **특수고용 노동자**
specified-employment worker
- 이주노동자란: (i)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주에 의하여 취업국에 파견된 자; (ii) 전문직, 상업적, 기술적 또는 기타 고도의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한정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 또는 (iii) 취업국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하여 한정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 또는 단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특수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그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취업국을 출국하여야 할 자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g)).
참조 항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472 **특정사업 노동자**
project-tied worker
- 고용주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수행되는 특정사업에만 근무하도록 취업국에 입국이 허가된 이주 노동자.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 2(f)).
참조 항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473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 1951 년 난민 협약에 제시된 난민에 대한 정의의 근거 중 하나. 이는, 박해에 대한 위협과 관계없이,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나 혹은 사회로부터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된 개인들의 집단을 일컫음. 이러한 특성은 종종 내재적이며 변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정체성과 양상에 핵심적인 것임.
참조 항목: 난민 (refugee)

II

- 474 **판결**
judgment 소송사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참조 항목: *공정한 재판 (fair trial)*
- 475 **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s 2000 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로, 2000 년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2000 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 의정서, 2001 년 총기류,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등이 팔레르모 의정서에 포함됨.
참조 항목: *밀입국 (smuggling),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 476 **평화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peace 국제 조약, 협정, 또는 약속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이나 전쟁을 계획, 준비, 착수 또는 벌이는 행위.
참조 항목: *범죄, 국제적 (crime, international),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 범죄 (war crimes)*
- 477 **포기**
renunciation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여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잃는 것.
참조 항목: *무국적상태 (statelessness)*
- 478 **포용**
inclusion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삶의 전 영역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고 성취하도록 고안된 과정. 공통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포용적인 사회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 문화적·종교적인 다양성, 사회 정의 그리고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의 특별한 요구, 민주적 참여 그리고 법치의 존중(1995 년 UN 사회개발 정상회담 4 장, 66 번)에 기초함.
참조 항목: *동화 (assimilation), 통합 (integration)*
- 479 **피고**
defendant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 480 **피고**
respondent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사람.
참조 항목: *피고 (defendant), 원고 (plaintiff)*
- 481 **피구금자**
detainee 구금된 자.
참조 항목: *구금 (detention)*
- 482 **피부양자**
dependant 일반적으로 타인의 지원에 의지하는 자를 지칭. 이주의 맥락에서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의미함. 이때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통 "피부양자"로 간주함.
참조 항목: *아동 (child), 사실혼 배우자 (de facto partner), 수반신청자 (derivative applicant), 가족의 구성원 (members of the family), 미성년자 (minor)*

ㅎ

- 483 **학생**
student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 484 **합법적 입국**
lawful admission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 유효한 출입국 사증을 소지한 경우를 포함함.
- 485 **합법적인**
lawful
법에 반하지 않는; 법에 따르는 혹은 법이 인정하는.
- 486 **합법화**
legalization
특정의 행위를 적법화하는 조치;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강제력에 의한 권한부여 또는 정당화.
참조 항목: 사면 (*amnesty*), 정규화 (*regularization*)
- 487 **합의/협정**
agreement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 상호 양해 (서면 또는 구두).
참조 항목: 의사 일치 (*accord*), 협약 (*convention*), 규약 (*covenant*), 법적 문서 (*instrument*), 조약 (*treaty*)
- 488 **항소**
appeal
어떤 결정에 대하여 상위기관의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로서 주로 하급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재심과 결정변복을 요청하는 것.
참조 항목: 사법 심사 (*judicial review*)
- 489 **해상구조**
rescue at sea
선박이 조난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배를 구조하는 상황. 해상에서 조난위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할 의무는 규약과 국제 관습법에 확고히 정립되어 있음. 구조작업을 조율할 책임을 맡은 국가는 안전한 장소로의 상륙을 시도하는데, 이때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는 구조된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조된 사람들에게 관할권에서 떠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기국, 제 3 국 혹은 국제기구가 재정착, 인터뷰, 귀환 등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서 상륙을 허가하기도 함.
참조 항목: 기국 (*flag State*), 선박 (*vessel*)
- 490 **해외시설 근무 노동자**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본인의 국적이 아닌 국가의 관할권 아래 놓인 해외시설에 고용된 이주노동자” (1990 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조(2)(d)).
참조 항목: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
- 491 **해외이전**
offshoring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타 국가로 옮김.
참조 항목: 아웃소싱 (*outsourcing*)
- 492 **행정상 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
권한 있는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많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비정규상태에 있는 이주자의 입국 시 또는 강제추방을 위하여 이주자의 행정상 구금을 행하고 있음.
참조 항목: 구금 (*detention*), 비정규 상황 이주자 (*migrant in an irregular situation*)

- 493 **허가(증)**
permit
주로 정부당국에 의해 발행된 문서로, 사물이 존재하거나 사람이 특정 행위 혹은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허용하는 문서. 이주의 맥락에서는 흔히 거주허가증 혹은 노동허가증 등을 의미함.
참조 항목: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사증 (visa), 노동허가증 (work permit)
- 494 **헌법**
constitution
한 국가의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법으로 주권의 범위와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함과 더불어서 정부의 개념, 특성과 조직을 정립해 놓음. 국제 공법에 따르면, 헌법은 국제 기구를 설립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정의하는 조약을 의미.
- 495 **현지 체재 중 난민**
refugees in situ
참조: 현지 체재 중 난민 (refugees sur place)
- 496 **현지 체재 중 난민**
refugees sur place
현지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사람으로서 출신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였으나 나중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난민이 된 사람. 현지 체재 중 난민은 자국을 떠난 이후에 본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혹은 억압 정책 및 박해 정책의 도입이나 강화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음. 또한 본국 밖 체류국이나 피난처에서의 선의의 정치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국에 귀환하지 못할 박해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도 현지 체재 중 난민을 주장할 수 있음.
참조 항목: 박해 (persecution), 난민 (refugee)
- 497 **혈통, 가계**
lineage
가계와 자손; 가족, 조상 혹은 후손.
- 498 **협약**
convention
참조: 조약 (treaty)
- 499 **환경 이주자**
environmental migrant
환경이주자는 주로 갑작스런 혹은 점진적인 환경변화로 그들의 생명 혹은 생활 조건에 악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거주지를 떠나야 하거나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 국내에서 이동하기도 하고 해외로 이동하기도 함.
참조 항목: 환경이재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
- 500 **환경이재민**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
환경악화나 환경파괴가 비록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으로 강제이주를 하게 된 사람들로, 상주국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 이 용어는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나 존재이유를 갖지 않는 환경난민 혹은 기후난민에 비해 덜 논쟁적인 대안으로서 사용되며, 분명히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이동을 경험한 환경이주자의 한 범주를 의미함.
참조 항목: 환경 이주자 (environmental migrant)
- 501 **환국권**
right to return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의 다른 측면. 1948 년 세계인권선언 13 조(2) 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 조는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참조 항목: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인권

(human rights), 본국송환(권) *(repatriation)*,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502 후견인
guardian

보통 타인의 무능력, 장애 또는 미성년과 같은 신분상의 이유로 그 타인 또는 재산을 보호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 후견인은 여러 목적을 위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

BIBLIOGRAPHY

Literature

- Aleinikoff, T.A., Chetail, V. (Ed.),
2003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M.C. ASSER PRESS, The Hague
- Bernhardt, R. (Ed.),
1985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8, Elsevier Science Publisher, B.V., Amsterdam
- Cholewinski R., Perruchoud R., MacDonald E.,
2007 *International Migration Law: Developing Paradigms and Key Challenges*
T.M.C. Asser Press
- Council of Europe
2002 *Creation of a Charter of Intent on Clandestine Migration*, Report of the Rapporteur of the Committee on Migration, Refugees and Demography at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02/EDOC9522.htm>
- Council of European Union
2002 *Proposal for a Return Action Programme, Annex 1: Indicative Definitions*, Brussels at
<http://register.consilium.eu.int/pdf/en/02/st14/14673en2.pdf>
-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0 *Asylum and Migration Glossary*
- Garner, B.A. (Ed.),
1999 *Black's Law Dictionary* (Seven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Minnesota
- Ghosh, B.
1998 *Huddled Masses and Uncertain Shores: Insights into Irregular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artinus Nijhoff
- Grant, J.P, Barker J.C. (Ed.),
2004 *Parry and Grant Encyclopa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Second Edition), Oceana Publications, Inc. Dobbs Ferry, New York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7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Annex: Labour Migration Statistics Questionnaire's Terms and Concepts at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nt/download/ilmdbqs.pdf>
- 2001 *Report on Stopping Force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9th Session, Report I (B)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2008 *World Migration 2008: Managing Labour Mobility in the Evolving Global Economy*, Volume 4, IOM World Migration Report Series, Geneva
- 2005 *World Migration 2005: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ume 3, IOM World Migration Report Series, Geneva
- 2003 *World Migration 2003: Managing Migration,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People on the Move*, Volume 2, IOM World Migration Report Series, Geneva
- 2001 "The Role of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in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OM Migration Research Series*, No. 3, Geneva
- 1997 "Terminology and Typologies of Migration", *IOM Overview of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tion Management Training Programme, IOM Geneva
- 1970s *Glossary: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of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in Migration Work*,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European Migration, Geneva

Perruchoud, R.,

- 1992 "Persons falling under the Mandat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and to Whom the Organization may Provide Migratio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4, No. 2,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1998 "Migration Termin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and Law Courses*, Budapest, Hungary

United Nations

- 1998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vision 1, Glossary*, UN; also at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M/SeriesM_58rev1E.pd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1998 *Concise report on world population monitoring, 1997: International Migration & Development*, UN, New York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2010 *Glossary of Migration Related Terms*
www.unesco.org/shs/migration/glossary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2006 *Master Glossary of Terms Revision 1*, UNHCR Geneva; also at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2ce7d444.html>

1979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Geneva

Van Krieken, P. J. (Ed.),
2004 *The Consolidated Asylum and Migration Acquis: The EU Directives in an Expanded Europe*, T.M.C. ASSER PRESS, The Hague

Documentary Sources¹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907 (entry into force 26 January 1910) [187 Consol. T.S. 227]

Slavery Convention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and Slavery), 1926 (entry into force 9 March 1927), [60 LNTS 253], as amended by Protocol Amending the Slavery Convention, 1953 (entry into force 7 December, 1953) [182 U.N.T.S. 51]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1930 (entry into force 1 July 1937)

ILO Convention No.29 Concerning Forced Labour, 1930 (entry into force 1 May 1932; abolished by Convention No.C105, 1957)

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 (entry into force 26 December 1934)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entry into force 24 October 1945)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1946 (entry into force 17 September 1946) [1 U.N.T.S. 1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G.A. res. 217A (III)]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1948 [O.A.S. Res. XXX]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 (entry into force 12 January 1951) [78 U.N.T.S. 277]

IV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1949 (entry into force 21 October 1950) [75 U.N.T.S. 287]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 (entry into force 3 September 1953) [213 U.N.T.S. 222]

¹For a comprehensive list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instruments, see: Perruchoud R., Tomolova K., eds., *Compendium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Instruments*, T.M.C. Asser Press, 2007.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entry into force 22 April 1954) [189 U.N.T.S.137]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1954 (entry into force 6 June 1960) [360 U.N.T.S. 117]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1956 (entry into force 30 April, 1957) [226 U.N.T.S. 3]

European Social Charter, 1961 (entry into force 26 February 1965) [529 U.N.T.S. 89]

Protocol IV to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1963 (entry into force 2 May 1968) [E.T.S. No. 46]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entry into force 19 March 1967) [596 U.N.T.S 26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entry into force 4 January 1969) [660 U.N.T.S. 19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999 U.N.T.S. 17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entry into force 3 January 1976) [993 U.N.T.S. 3]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entry into force 4 October 1967) [606 U.N.T.S. 267]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entry into force 18 July 1978) [1144 U.N.T.S. 12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entry into force 27 January 1980) [1155 UNTS 331]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78 (entry into force 18 July 1978) [1144 U.N.T.S. 123]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entry into force 3 September 1981) [1249 U.N.T.S. 13]

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entry into force 21 October 1986)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entry into force 26 June 1987) [Doc. A/RES/39/46]

Schengen Agreement, 1985 and the 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1990 (entry into force on 1 September 199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Doc. A/RES/44/2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entry into force 1 July 2003) [A/RES/45/158]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A/RES/48/104)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Un Doc E/CN.4/1998/53/Add.2]

ILO Convention No.182 Concerning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entry into force 19.11. 2000)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entry into force 10 April 2002) [A/RES/54/109]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entry into force 29 Sept. 2003) [G.A. res. A/RES/55/25]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nex II, 2000 [G.A. res. A/RES/55/25], (entry into force 25 December 2003)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nex III, 2000 [G.A. res. A/RES/55/25], (entry into force 28 January 2004)

색인

Index

영문용어 English Term	국문용어 Korean Term	번호 Entry Number
abduction	유괴	314
absconding	도주	124
accession	가입	1
accommodation centre	임시숙소(난민, 이주자를 위한)	365
accord	의사 일치	319
accredited State	외교관 수용국	296
accrediting State	외교관 파견국	297
acculturation	문화변용	144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적취득	77
adjudication	심사	254
adjudicator	심사관	255
adjustment of status	체류자격 조정	445
administrative detention	행정상 구금	492
admission	입국허가	375
adoption	입양, 채택	376
affidavit (of support)	부양서약서	175
agreement	합의/협정	487
alien	외국인	301
alternatives to immigration detention	이민자 구금에 대한 대안	326
amnesty	사면	199
ancestry-based settlers	연고 정착자	278
appeal	항소	488
applicant	신청자	250
application	신청	248
arbitrary	자의적인	386
armed conflict	무력충돌	138

arrival/departure card	출입국 카드	463
assets forfeiture	자산 몰수	383
assimilation	동화	126
assisted migration	지원받은 이주	428
assisted voluntary return	지원받은 자발적 귀환	429
asylum	비호	192
asylum (diplomatic)	비호(외교적)	194
asylum (territorial)	비호(영토내의)	193
asylum-seeker	비호신청자	197
best (effective) practices	성공사례	223
bilateral	쌍무적인/양자간	256
bilateral labour migration agreements	노동이주 쌍무/양자 협정	109
biometrics	생체측정학	215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459
bona fide	선의의(라틴어)	222
bona fide applicant	선의의 신청자	221
bond	보증금	165
bondage	예속	293
bonded labour	예속된 노동	294
border	국경	60
border control	국경 통제	64
border crossing	월경	309
border management	국경 관리	62
border officials	국경관리자	65
boundary	경계	38
brain drain	두뇌유출	128
brain gain	두뇌유입	127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378
business migrant	사업 이주자	208
business visitor	사업 방문자	207
capacity building	역량 구축	276
carbon dioxide sensors	이산화탄소 감지기	328

carrier	운송 회사	305
carrier liability law	운송 회사 책임에 관한 법	306
certificate of identity	신분증	246
cessation clauses	중지 조항	425
change of status	체류자격 변경	444
checkpoint	검문소	35
child	아동	257
child adoption (international)	아동 입양(국제)	259
child exploitation	아동 착취	260
child labour	아동 노동	258
circular migration	순환이주	238
citizen	시민	242
citizenship	시민권	243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244
civil detainees	민간 억류자	149
claim	청구	440
clandestine migration	비밀 이주	183
climate refugee	기후난민	102
coercion	강제	13
complementary protection	보충적 보호	166
constitution	헌법	494
consular functions	영사 기능	284
consular officers	영사	283
consular protection	영사 보호	286
consular registration	영사 등록	285
(pre-) consular support services	(사전) 영사 지원 서비스	287
contiguous zone	접속수역	404
contractual labour	계약 노동	47
convention	협약	498
conveyance	운송수단	307
country of destination	목적국	134
country of habitual/usual residence	상주국	212
country of origin	출신국	460

country of transit	경유국	41
covenant	규약	93
credibility assessment	신뢰성 평가	245
crime, international	범죄, 국제적	161
crimes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한 죄	348
crimes against peace	평화에 반한 죄	476
cross-border migration	월경 이주	310
cultural orientation	문화 교육	143
culture	문화	142
custody	양육권, 보호관리	266
customary law, international	관습법, 국제	55
data protection	정보 보호	408
data subjects	정보 대상	407
de facto	실제적으로/ 사실상(라틴어)	251
de facto partner	사실혼 배우자	206
de facto protection	사실상 보호	205
de facto refugees	사실상 난민	203
de facto statelessness	사실상 무국적	204
de jure	법률적으로, 법률상(라틴어)	162
debt bondage	채무에 따른 예속	439
deception	기만/사기	97
defendant	피고	479
demography	인구학	344
denationalization	국적박탈	74
dependant	피부양자	482
deportation	강제퇴거	23
deportation order	강제퇴거 명령	24
derivative applicant	수반신청자	234
derogation	권리유예	89
detainee	피구금자	481
detention	구금	56
determination	결정	37
development	개발	26

diasporas	디아스포라	131
diplomatic asylum	외교적 비호	300
diplomatic protection	외교적 보호	299
discretion	자유재량권	385
discrimination	차별	437
displaced person	이재민	329
displacement	이재이주	330
documented migrant	등록 이주자	130
documented migrant worker	등록 이주노동자	129
domicile	거소지	30
dual/multiple nationality	이중/복수 국적	340
Dublin II Regulation	더블린 제 2 규약	121
due process	적법절차	399
durable solution	영구적 해결책	282
economic migrant	경제적 이주자	45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46
emigrant	(국외로의)이민자	325
emigration	(국외로의)이민	322
empowerment	역량강화	277
entry	입국	367
entry ban	입국금지	370
entry into force	발효	155
entry stamp	입국심사인	373
environmental migrant	환경 이주자	499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	환경이재민	500
exclusion	입국거부	369
exclusion clauses	배제조항	158
exit stamp	출국심사인	458
exit visa	출국사증	457
exodus	집단이동	434
expatriate	국적이탈자	76
expatriation	국적이탈	75
exploitation	착취	438

expulsion	추방	453
expulsion en masse	집단추방	435
expulsion order	추방명령	454
extension	연장	280
ex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의 이재민	71
extradition	인도, 송환	346
facilitated migration	이주촉진	339
fair trial	공정한 재판	53
family members	가족구성원	3
family migration	가족이주	5
family reunification/reunion	가족재결합	6
family unity, right to	가족결합권	2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여성할례	269
feminization of migration	이주의 여성화	335
first country of asylum	최초 비호국	451
flag State	기국	96
forced displacement	강제적 이재이주	22
forced marriage	강제결혼	15
forced migration	강제이주	21
forced repatriation	강제송환	18
forced resettlement/relocation	강제 재정착	14
forced return	강제귀환	16
forced/compulsory labour	강제노동	17
foreigner	외국인	302
fraud	사기	198
fraudulent document	위조문서	313
freedom of movement	이동의 자유	320
frontier	국경	61
frontier worker	국경 노동자	63
fundamental human rights	기본 인권	98
gender	젠더	414
gender based violence	젠더 폭력	415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일반 원칙	81

genocide	집단 살해	432
genuine and stable marriage	진실되고 안정적인 결혼	430
globalization	전지구화/세계화	402
good faith	선의	220
governance of migration	이주 거버넌스	332
green border	녹색 국경	113
green card	그린카드	94
grounds of inadmissibility	입국불허사유	372
guarantee	보증	164
guardian	후견인	502
guest worker	초청 노동자	447
habeas corpus	인신 보호 영장	351
habitual/usual residence	상주지	213
health	건강	33
health assessment	건강 검진	34
hearing	심리	253
high seas	공해	54
highly skilled/qualified migrant	고속련/고급인력 이주자	51
holding centre	유치소	318
host country	목적국/수용국/취업국	135
human rights	인권	345
human security	인간 안보	342
human trafficker	인신매매자	354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지원	349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인도법(국제)	347
humanitarian principles	인도주의 원칙	350
identity document	신분증명 서류	247
illegal alien	불법체류외국인	181
illegal entry	불법 입국	179
illegal migrant	불법 이주자	178
illegal migration	불법 이주	177
immigrant	(국내로의) 이민자	324
immigration	(국내로의) 이민	321

immigration liaison officer	이민연락관	323
immigration quota	입국이민 쿼터	374
immigration status	체류자격	443
immigration zone	출입국관리구역	464
inalienable	양도불가의	265
inclusion	포용	478
individual migration	개별이주	27
influx	유입	316
inhuman treatment	비인도적 처우	184
injunction	가처분	7
instrument	법적 문서	163
integration	통합	469
inter-country adoption	국가간 입양	59
interception	차단	436
internal migration	국내이주	67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	국내이재민	66
international airport	국제공항	79
international assistance	국제원조	85
international law (public)	국제법(공법)	83
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이주	86
international migration law	국제이주법	87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국제 최소기준	78
international protection	국제적 보호	88
interview	인터뷰	360
intra-corporate transferee	기업 내 전근자	101
involuntary repatriation	비자발적 송환	185
irregular migrant	비정규 이주자	189
irregular migration	비정규 이주	188
itinerant worker	순회노동자	239
judgment	판결	474
judicial review	사법 심사	200
judiciary	사법부	202
jurisdiction	사법권, 관할권	201

jus cogens	강행규범	25
jus sanguinis	속인주의/혈통주의	230
jus soli	속지주의/출생지주의	231
kidnapping	납치	107
labour migration	노동이주	108
laissez-passer	여행증명서(UN 에서 발행한)	274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무력충돌에 관한 법(국제)	139
law of nations	국제법	80
lawful	합법적인	485
lawful admission	합법적 입국	484
legalization	합법화	486
legitimate	적법한	400
less/low skilled and semi -skilled migrant worker	저숙련 그리고 반숙련 이주 노동자	398
lineage	혈통, 가계	497
local remedies, exhaustion of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68
long-term migrant	장기 이주자	387
lookout system	감시 제도	9
loss of nationality	국적 상실	73
mala fide	악의로(라틴어)	262
mandate refugee	위임난민	312
mass/collective migration	집단 이주	433
members of the family	가족의 구성원	4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473
migrant	이주자	336
migrant flow	이주자 흐름(유량)	338
migrant in an irregular situation	비정규 상황 이주자	187
migrant stock	이주자 규모(저량)	337
migrant worker	이주 노동자	334
migrant worker in an irregular situation	비정규 상황 이주 노동자	186
migrants for settlement	정착 이주자	409
migration	이주	331
migration management	이주 관리	333

minimum standard	최소 기준	450
minor	미성년자	148
minority	소수자	227
mixed flows	복합적 이주 흐름	172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116
multilateral	다자간	117
national	국민	69
national territory	국가 영역	58
national treatment	국민처우	70
nationality	국적	72
naturalization	귀화	90
net migration	순 이주	237
neutrality	중립	423
neutralized zones	중립지대	424
next of kin	최근친자	449
nomad	유목민	315
non-admission	입국불허	371
non-derogable human rights	절대 불가침인권	403
non-discrimination	비차별	191
non-documented migrant workers	미등록 이주 노동자	145
non-national	비국민	182
<i>non-refoulement</i>	강제송환금지	20
oath	선서	218
offshoring	해외이전	491
ombudsman	옴부즈만	295
orderly migration	질서 있는 이주	431
organized crime	조직범죄	418
orphan	고아	52
outsourcing	아웃소싱	261
overstay	체류기간도과(초과)	442
Palermo Protocols	팔레르모 의정서	475
passenger	승객	241
passport	여권	267

penalty	벌칙	160
permanent residence	영주권	288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289
permanent settlers	영구 정착자	281
permit	허가(증)	493
persecution	박해	153
persona non grata	외교상 기피인물(라틴어)	298
personal data	개인 정보	28
personal jurisdiction	인적 관할권	356
petition	청원	441
place of habitual residence	상주지	214
plaintiff	원고	308
point of entry	입국 지점	368
point of exit	출국 지점	455
policy	정책	410
political opinion	정치적 의견	411
population displacement	인구강제이주	343
prima facie	반증이 없는 한(라틴어)	154
primary inspection	일차심사	361
principal/primary/main applicant	주신청자	421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	84
pro bono	무료로 행하는(라틴어)	140
prohibition of torture	고문 금지	50
project-tied worker	특정사업 노동자	472
prosecution	기소	99
protected persons	보호되는 사람들	169
protection	보호	168
protection of minorities	소수자 보호	228
push-pull factors	배출-흡입 요인	159
qualified national	유자격 국민	317
quarantine	격리	36
quasi-judicial	준사법적	422
quota	쿼터	467

race	인종	357
racial discrimination	인종 차별	358
racism	인종주의	359
rape	강간	12
ratification	비준	190
re-emigration	(국외로의)재이민	388
readmission	재입국허가	389
readmission agreement	재입국허가협정	390
receiving country	수용국	235
reception centre	리셉션 센터	132
<i>refoulement</i>	강제송환	19
refugee	난민	103
refugee (mandate)	난민(위임)	105
refugee (prima facie)	난민(반증이 없는 한)	104
refugees in orbit	부유난민	176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난민지위 인정절차	106
refugees in situ	현지 체재 중 난민	495
refugees in transit	경유 난민	40
refugees sur place	현지 체재 중 난민	496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지역협의절차	427
regular migration	정규 이주	405
regularization	정규화	406
reintegration	재통합	393
reintegration (cultural)	재통합(문화적)	395
reintegration (economic)	재통합(경제적)	394
reintegration (social)	재통합(사회적)	396
rejected applicant	거부된 신청자	29
religion	종교	419
remittances	송금	232
removal	퇴거	470
renunciation	포기	477
repatriation	본국송환(권)	174
repatriation of funds	본국송금	173

replacement migration	대체이주	120
rescue at sea	해상구조	489
reservation to a treaty	조약의 유보	417
resettlement	재정착	392
residence	거주(지)	31
residence permit	거주허가(증)	32
respondent	피고	480
restitution	배상	157
return	귀환	91
return migration	귀환 이주	92
reverse brain drain	역두뇌유출	275
right of asylum	비호권	196
right to leave	출국권	456
right to return	환국권	501
rural-rural migrants	농촌 간 이주자	114
rural-urban migrants	농촌도시이주자	115
safe country of origin	안전한 출신국	264
safe haven	도피처	125
safe third country	안전한 제 3 국	263
Schengen Agreement and Convention	셴겐협정 및 협약	240
screening	선별	217
seafarer	선원	219
seasonal migrant worker/ migration	계절이주노동자/이주	48
secondary inspection	추가심사	452
secondary migration	이차이주	341
self-employed migrant worker	자영 이주 노동자	384
sending country	송출국	233
sensors	감지기	11
separated children	이산자녀	327
servitude	노예상태	111
sexual assault	성폭행	225
sexual exploitation	성착취	224
short-term migrant	단기 이주자	119

skilled migrant	숙련이주자	236
slavery	노예제	112
smuggled person/migrant	밀입국자/밀입국이주자	152
smuggler (of migrants)	밀입국 알선자	151
smuggling	밀입국	150
social capital transfer	사회적 자본 이동	211
soft law	연성법	279
source country	출신국/송출국	462
sovereignty	주권	420
specified-employment worker	특수고용 노동자	471
sponsorship	재정보증	391
spontaneous migration	자력 이주	380
spontaneous return	자력 귀환	379
standard of proof	입증 기준	377
State	국가	57
State of employment	취업국	466
State of origin	출신국	461
State of refuge	비호국	195
State of transit	경유국	42
stateless person	무국적자	137
statelessness	무국적상태	136
step migration	단계적 이주	118
stock (foreign)	저량(외국인)	397
student	학생	483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주체	82
suit	소송	226
summons	소환	229
technical cooperation	기술 공조	100
temporary (labour) migration	임시(노동)이주	363
temporary migrant workers	임시이주노동자	366
temporary protection	임시보호	364
temporary travel documents	임시 여행 증명서류	362
territorial asylum	영토 내 비호	290

territorial jurisdiction	영토관할권	291
territorial sea	영해	292
terrorism	테러리즘	468
third country	제 3 국	412
third-country national	제 3 국 국민	413
torture	고문	49
total migration	총 이주	448
tourism	여행	270
trafficker, human	인신매매자	355
trafficking in persons	인신매매	352
transit	경유	39
transit passengers	경유승객	44
transit visa	경유사증	43
transnationalism	초국적주의	446
transportation	운송	304
travel documents	여행 증명서류	271
travel documents (Convention)	여행서류(난민협약의거)	272
traveller	여행자	273
treaty	조약	416
ultra vires	월권(라틴어)	311
unaccompanied children	보호자 미동반 아동	171
unaccompanied minors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170
unauthorized/unlawful entry/admission	무허가/불법 입국	141
undocumented migrant	미등록이주자	147
undocumented migrant workers/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정규 상황 이주노동자	146
universal jurisdiction	보편적 관할권	167
unlawful entry	불법입국	180
uprooted people	실향민	252
urban-rural migrants	도시-농촌 이주자	122
urban-urban migrants	도시간 이주자	123
vessel	선박	216
victim of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피해자	353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폭력	268
visa	사증	209
visa refusal	사증 발급 거부	210
visitor	방문자	156
voluntary repatriation	자발적 송환	382
voluntary return	자발적 귀환	381
vulnerable group	취약 집단	465
waiver	면제	133
war crimes	전쟁 범죄	401
watchlist	감시대상 목록	10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근거가 충분한 (박해)공포	95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신청 철회	249
witness	증인	426
work permit	노동허가증	110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해외시설 근무 노동자	490
worst forms of child labour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8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303

Other titles in the series

- N°1 Glossary on Migration (2004)
- N°2 Glossary on Migration (Russian, 2005)
- N°3 Migrations et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2005)
- N°4 Migraciones y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2005)
- N°5 Biometric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2005)
- N°6 Glossary on Migration (Arabic, 2006)
- N°7 Glosario sobre Migración (2006)
- N°8 Glossary on Migration (Slovenian, 2006)
- N°9 Glossaire de la Migration (2006)
- N°10 Glossary on Migration (Albanian, 2007)
- N°11 Glossary on Migration (Bosnian, 2007)
- N°12 Migration and the Right to Health: A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Law and Council of Europe Instruments (2007)
- N°13 Glossary on Migration (Chinese, 2008)
- N°14 Droit international de la migration: recueil d'instruments (2008)
- N°15 Human Rights of Migrant Children (2008)
- N°16 Laws for Legal Immigration in the 27 EU Member States (2009)
- N°17 Législations relatives à l'immigration légale dans les 27 Etats membres de l'UE (2009)
- N°18 Glossary on Migration (Turkish, 2009)
- N°19 Migration and the Right to Health: A Review of International Law (2009)
- N°20 Glossary on Migration (Greek, 2009)
- N°21 Glossary on Migration (Italian, 2009)
- N°22 Glossary on Migration (Portuguese, 2009)
- N°23 Glossary on Migration (Macedonian, 2010)
- N°24 Rights, Residence, Rehabilitation: a Comparative Study Assessing Residence Options for Trafficked Persons (2010)
- N°25 Glossary on Migration, Second Edition (2011)
- N°26 Glossary on Migration (Korean, 2011)

IOM 이민정책연구원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public of Korea

IOM 이민정책연구원(MRTC: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특별 협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본원은 정부와 지역사회, 이민자 및 그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부의 이민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본원은 아시아 지역 및 세계 각국의 인구이동 추이와 시행중인 이민정책에 초점을 둬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관련 조사 및 연구수행
- 국내외 이민법 및 이민정책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 교육
- 국제교류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The IOM MRTC i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reated through a special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MRTC is committed to informing and improving policy making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ig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and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MRTC focuses on human mobility trends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tended to encourage the freer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resources,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region in particular. Its main activities include:

- Conducting migration-related surveys and research,
- Promoting rel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providing advisory services,
- Hosting or otherwise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mes.

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고양시 및 국내 협력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he MRTC expresses its deep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and guidance it receives from its partners in Korea,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Gyeonggi-do and Goyang-si.

IOM 이민정책연구원 출판물은 본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자 및 전자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OM MRTC publications, in both hard copy and electronic formats, are available from:

IOM 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68번지 웨스턴타워 4동 8층 410 - 838

IOM MRTC
Western Tower IV, 8th Floor, 868 Janghang 2-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Tel: +82.31.920 5600 | Fax: +82.31.920 5660 | Email : MRTC@iom-mrtc.org | Homepage : www.iom-mrtc.org

www.iom-mrtc.org



IOM • OIM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 MRTC